

16世紀 對日貿易의 展開와 葛藤*

朴 平 植**

- | | |
|----------------------|----------------------|
| I. 序言 | IV. 東아시아 交易環境과 對日貿易의 |
| II. 日本銀 流入과 對日貿易의 轉換 | 葛藤 |
| III. 對日貿易의 主導層과 中繼貿易 | V. 結語 |

I. 序言

朝鮮만이 아니라 中·日을 포함하는 東아시아사 전체에서 16세기는 농법의 발달에 기초하여 농촌경제가 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商業이 국내의 교역의 영역 모두에서 크게 진전하고 확대되었던 시기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하여 농촌시장의 발흥과 이들 소상품 생산과 유통에 따르는 화폐경제의 성장, 그리고 銀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三國間 對外貿易의 발전 양상이 한·중·일의 학계에서, 나아가 이 東아시아사와 南·西 아시아사를 포괄하여 아시아사 전체를 유럽을 포함한 世界史의 視野에서 정리하는 각종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어 이 시기에 대한 이해를 提高하여 왔다.¹⁾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688)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 李泰鎭, 「16세기 東아시아의 경제 변동과 정치·사회적 동향」 『朝鮮儒敎社會史論』(지식산업사, 1989); 岸本美緒·宮嶋博史/김현영·문순실 역, 『조선과 중국, 근세 500년을 가다』(역사비평사, 2003); 岸本美緒, 『東アジアの「近世」』(山川出版社, 1998); Anthony Reid,

조선사에서 16세기는, 15세기 후반의 변화를 토대로 해서 국내의 상업의 쏠림에서 국초 이래 천명되어 왔던 '抑末'의 인식과 정책, 그리고 교환경제의 여러 영역에 걸쳐 큰 변동이 노정되었던 시기였음이 밝혀졌다. 국내 상업에서 市廛의 발전과 場市의 확산, 경상과 개성상인을 포함하는 富商大賈의 성장과 主人層을 비롯한 유통체계의 정비, 그리고 이 같은 변화를 초래한 상업 인식의 변동과 더불어 당대 관인 지배층 사이의 殖貨와 逐末 풍조 등이 규명되었고,²⁾ 한편으로 대외무역과 관련하여서는 대중국 대일본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던 교역의 발달 양상이 국내의 사치풍조 만연과 일본산 銀의 유입 등을 배경으로 하여 여러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었다.³⁾

本稿는 이상과 같은 16세기 商業史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일본산 은의 대량 유입과 함께 그 교역의 양상이 전환되고, 이후 대중국 무역과 연계하여 盛況과 葛藤의 국면을 노정하다, 마침내는 壬辰倭亂의 과국으로 이어졌던 16세기 對日貿易의 전개 과정을 동 시기에 조성되고 있던 동아시아 국제교역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Two: Expansion and Crisis (Yale University Press, 1993).

- 2) 朴平植, 『朝鮮前期商業史研究』(지식산업사, 1999); 朴平植, 『朝鮮前期 交換經濟와 商人 研究』(지식산업사, 2009); 李景植, 「16世紀 場市의 成立과 그 基盤」 『韓國史研究』 57(한국사연구회, 1987) 『朝鮮前期土地制度研究』[II](지식산업사, 1998)에 수록; 백승철, 「16세기 부상대교의 성장과 상업활동」 『역사와 현실』 13(한국역사연구회, 1994).
- 3) 韓相權, 「16世紀 對中國 私貿易의 展開 - 銀貿易을 중심으로」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知識産業社, 1983); 이태진, 「16세기 국제교역의 발달과 서울상업의 성쇠」 『서울상업사』(태학사, 2000); 구도영, 「16세기 對明 私貿易의 정책 방향과 굴레 - 中宗代 明의 '조선사행단 출입제한 조치'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2(조선시대사학회, 2012); 구도영, 「16세기 조선의 對明貿易을 이해하기 위한 몇가지 국면」 『歷史學報』 226(역사학회, 2015); 구도영, 「16세기 조선의 對明 불법무역의 확대와 그 의의」 『韓國史研究』 170(한국사연구회, 2015); 구도영, 「16세기 동아시아 질서에서 본 조선 對明貿易의 특징과 위상」 『歷史學報』 235(역사학회, 2017); 구도영, 「16세기 조선 對明 使行貿易의 교역규모 검토」 『한국문화』 80(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李鉉淙, 『朝鮮前期 對日交涉史研究』(韓國研究院, 1964); 金柄夏, 『李朝前期 對日貿易 研究』(韓國研究院, 1969); 李正守, 「15·16세기의 對日貿易과 經濟變動」 『釜大史學』 22(부대사학회, 1998).

의 환경을 고려하면서 파악하려는 연구이다. 특히 이 시기 대일무역에서 활약하고 있던 조선 상인들의 商活動을 中繼貿易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규명하되, 이들 조선 상인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에 새롭게 주목함으로써, 조선전기 상업사 전반에 대한 再構成 作業의 一環으로 삼고자 한다.

II. 日本銀 流入과 對日貿易의 轉換

16~17세기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사 차원의 交易史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산 銀이 무역 품목으로서 조선에 본격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中宗朝 후반, 그 중에서도 末年 무렵이었다. 중종 33년(1538) 8월 영의정 尹殷輔와 좌의정 洪彦弼은, 근래 조정에서 왜인들이 가져오는 소지물에 대한 공무역가를 舊價에 비해서 줄여 지급하자, 이번에 온 倭使는 다른 商物을 가져오지 않은 채 오로지 銀兩만을 가지고 온 사정을 보고하고 있었다.⁴⁾ 『조선왕조실록』에서 일본산 은의 대량 유입의 첫 사례로 확인되는 이 기사에 이어, 그 두 달 뒤에는 그와 관련한 자세한 내역과 조선 정부의 대응 방침이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중종 33년(1538) 10월 의정부는 호조 예조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사항을 국왕에게 上奏하여 재가를 받고 있었다. 1) 이번 使行을 전후하여 小二殿의 왜사들이 가져온 은이 모두 375斤으로, 그 가격이 5승 면포로 환산하여 480여 兩(2만 4천여 원)에 이르는 점, 2) 만약 이 은 전체를 공무역으로 받아준다면 향후 일본國王使나 大內殿 등도 모두 別幅에 商物이나 이 같은 은을 보내 공무역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 3) 그러므로 그 중 1/3만 공무역을 하면서 예조의 回答를 통해 앞으로 商物로 銅·鐵·鉛鐵 외에 銀은 가져오지 말 것을 통지하되, 공무역의

4) 『中宗實錄』 卷88, 中宗 33年 8月 己未, 18冊, 199쪽.

액수는 왜사의 반응을 보아가며 그 양을 조절할 것 등이었다.⁵⁾ 나아가 조정은 이 자리에서 만약 공무역하는 1/3의 은 이외의 것을 사무역을 허락할 경우, 부상대 고들이 唐物 무역을 위해 倭銀 貿入에 나설 것을 우려하며, 사무역 불허 방침을 확인하고도 있었다. 요컨대 중종 33년(1538)에 일본 九州의 小二殿에서 처음으로 375근(240kg)⁶⁾에 이르는 다량의 일본산 은을 처음으로 조선에 보내 무역을 요청해 온 것을 시작으로, 이후 일본산 은의 대거 유입이 본격화하였던 것이다.

其實, 15세기 조선과 일본의 무역 물품 수출·입 구성에서 일본산 은은 주요 수입 품목이 아니었다. 국초 이래 대일무역에서 주된 수입 물품은 일본산 銅·鐵 鐵과 硫黃 등 광산물, 그리고 일본 상인들이 琉球의 중개를 거쳐 공급해 오던 南方産의 胡椒·蘇木·丁香 등의 각종 약재·염료·향료품이 主種이었고, 여기에 牛皮·水牛角 등이 가끔 덧붙여지는 형태였다.⁷⁾ 이 시기 倭使나 상인들이 간혹 금과 더불어 은을 소지하고 그 무역을 요청해 온 적은 있었으나, 그 횟수나 양은 많지 않았다.⁸⁾ 그리고 이 같은 왜사의 무역용 소지 물품 구성은 15세기 후반 성종조 이후 대일무역이 확대되고 있던 시기에도 별다른 변동없이 지속되고 있었다.⁹⁾ 무엇보다 조선에서 금과 은은 세종조에 명나라와의 수차례 협상 끝에 국초 이래의 金銀貢을 土産으로 대체시킨 이후, 대중국 대일본 등 대외무역만이 아니라 국내교역에서도 그 거래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물품이었다.¹⁰⁾

5) 『中宗實錄』 卷88, 中宗 33年 10月 己巳, 18冊, 226쪽.

6) 이 수치는 李宗峯,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혜안, 2001), 215쪽의 <표 26>에 의거하여 환산한 것이다. 이하 본고의 度量衡 환산은 모두 이에 근거한 수치이다.

7) 주 3의 李鉉淙, 金柄夏, 李正守의 논고 참조.

8) 15세기에 일본과 이루어진 金銀 무역의 사례 몇몇을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世宗實錄』 卷109, 世宗 27年 8月 丙午, 4冊, 631쪽; 『世祖實錄』 卷1, 世祖 元年 7月 乙未, 7冊, 72쪽; 『成宗實錄』 卷175, 成宗 16年 2月 丁卯, 10冊, 689쪽; 『成宗實錄』 卷175, 成宗 16年 2月 戊寅, 10冊, 690쪽.

9) 朴平植, 「15世紀後半對外貿易의 擴大」, 『韓國史研究』 181(한국사연구회, 2018).

10) 朴平植, 「朝鮮初期의對外貿易政策」, 『韓國史研究』 125(한국사연구회, 2004); 申奭鎬, 「朝鮮中宗時代의禁銀問題」, 『稻葉博士還曆紀念滿鮮史論叢』(1938).

15세기에는 오히려 왜사들이 조선 정부에 銀의 下賜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엄격한 禁法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에 의해 일본으로 일부가 유출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었다. 그와 같은 사례를 15세기 후반으로 국한하여 보더라도, 우선 文宗 원년(1451) 정월 일본 關西지방의 薩摩·大隅·一向 三州의 태수 藤原忠國은 사신을 보내 土物을 바치면서 조선 정부에 綿紬·虎豹皮·人蔘 등과 더불어 맨 먼저 白銀을 청구하고 있었는데, 조선 조정은 희귀물인 인삼과 함께 銀이 朝鮮産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回賜를 거절하고 있었다.¹¹⁾ 이 같은 일본의 朝鮮銀 청구는 이후에도 이어져, 燕山君 8년(1502) 정월 대마도주가 사신 盛種을 보내 조선의 花銀 1천냥을 求請해 오자, 조선 정부는 역시 은이 본국산이 아님을 강조하며 대신 면주 200필을 特賜하기도 하였다.¹²⁾

16세기 이전 조선산 은의 일본 유출은 禁法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사이에서 密貿易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典型的 사례를 다음 睿宗 원년(1469) 3월의 은 밀무역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상인 李吉生은 通事 金致中과 연계하여 왜인 時難而羅의 金 8兩 5錢을 銀 40兩으로 무역하기로 약조하고 文券을 작성한 후에 왜인의 금을 받아 갔으나, 은 18냥과 인삼 50근 만을 지급함으로써 왜인 平武績에게 고발당하고 있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이길생과 김치중을 斬刑에 처하고 家産을 籍沒하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 또한 북방의 官奴에 永屬시키는 한편 재산을 적몰하였으며, 사기를 당한 왜인 時難而羅에게는 이길생의 면주 400필을 주어 미지급 銀 대신 보상하고 있었다.¹³⁾

요컨대 이 사건은 조선 상인 이길생이 왜인 時難而羅의 金을 銀으로 구매하

11) 『文宗實錄』 卷5, 文宗 元年 正月 甲辰, 6册, 341쪽.

12) 『燕山君日記』 卷42, 燕山君 8年 正月 壬辰, 13册, 464쪽.

이 같은 대마도의 朝鮮銀 求請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던 듯, 이듬해인 연산군 9년(1503) 4월에도 대마도에 보낸 回答를 통해, 年前 대마도가 사신 源貞宣을 통해 청구한 銀 1천냥 대신 조선 국왕이 허사한 絛布 100필을 왜사가 수령하지 않고 三浦에 버려두고 갔던 사실을 예조가 적기하여 문제 삼고 있었다(『燕山君日記』 卷49, 燕山君 9年 4月 癸亥, 13册, 560쪽).

13) 『睿宗實錄』 卷4, 睿宗 元年 4月 癸巳, 8册, 350쪽.

기로 하였다가 代價를 미지급하여 처벌된 사안으로, 16세기 이전 金銀 거래를 死罪로서 다스리는 금령에도 불구하고 조선산 은이 상인을 통해 일본으로 유출되고 있던 지간의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였다. 다시 말해 16세기 중종조 말년 경에 倭銀의 대량 유입으로 조선의 대외무역에 일대 轉換이 야기되기 이전 15세기에는, 조선과 일본 양국 사이에서 銀의 흐름이 일본에서 조선으로의 유입만이 아니라, 반대로 조선으로부터 일본으로의 유출 흐름이 양국 사이의 進獻과 回賜 형식 외에 또한 민간 차원의 밀무역 차원에서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잘 실증하고 있다 하겠다.¹⁴⁾

그런데 조선과 일본 양국 사이의 이 같은 은의 유통 흐름은, 주지하듯이 16세기 중종조 말엽에 이르러 日本銀의 대량의 그리고 일방적인 조선 유입으로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종 33년(1538) 수백 근에 이르는 막대한 량의 일본은이 倭使에 의해 처음 조선에 유입된 이후,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동 35년(1540) 7월에 이르면, 대간에서 이렇게 유입된 왜은이 도성 시전에 가득 糶充物 정도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었다.¹⁵⁾ 중종 37년(1542) 4월에는, 이와 같이 왜인들이 은을 대거 소지하고 와서 무역을 요구하는 상황이 近年에 시작되었다는 인식이 사헌부에 의해 제기되고 있었다.¹⁶⁾ 또 그 며칠 전, 사간원은 왜사가 은을 소지하고 온 것이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는 언급도 내놓고 있었다.¹⁷⁾

14) 이 같은 상인을 통한 朝鮮銀의 일본 유출 사례는 15세기 전반에도 자주 확인되는데, 다음은 그 몇의 출처이다.

『太宗實錄』 卷22, 太宗 11年 閏12月 己巳, 1册, 616쪽; 『太宗實錄』 卷27, 太宗 14年 5月 辛巳, 2册, 16쪽; 『太宗實錄』 卷27, 太宗 14年 5月 辛卯, 2册, 18쪽; 『世宗實錄』 卷44, 世宗 11年 5月 壬子, 3册, 180쪽; 『世宗實錄』 卷65, 世宗 16年 8月 壬戌, 3册, 587쪽; 『世宗實錄』 卷82, 世宗 20年 9月 癸未, 4册, 161쪽; 『世宗實錄』 卷87, 世宗 21年 12月 辛巳, 4册, 257쪽.

15) 『中宗實錄』 卷93, 中宗 35年 7月 甲寅, 18册, 403쪽.

16)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4月 丁丑, 18册, 573쪽.

17)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4月 甲戌, 18册, 573쪽.

나이가 그 다음 달 윤5월에는 다시 사헌부가 일본은의 좀 더 구체적인 유입 실태를 두고, “倭國에서 銀을 생산造銀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아 이 왜은이 조선에 널리 유포되어 이미 매우 혼한 물품(賤物)이 되어 버렸다.”¹⁸⁾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었다. 사헌부의 이 같은 왜은에 대한 실태 진단은 실제 그 해 4월, 일본 國王使 安心東堂이 무려 8만 냥에 이르는 은을 가지고 와 조선 정부에 공무역을 요청하고 있던 실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바였다.¹⁹⁾

일본 학계의 연구를 통해 이미 잘 밝혀진 바와 같이, 16세기 일본산 은의 대량 생산은 조선으로부터 전해진 鉛銀分離法이라는 기술적 진보에 기초한 것이었다.²⁰⁾ 그리고 이 연은분리법의 개발과 그 기법의 일본 傳授 과정은 그 내역을 우리의 기록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초인 연산군 9년(1503) 5월 癸未條의 『朝鮮王朝實錄』에는, 양인 金甘佛과 장예원 노비 金儉同이 개발한 납(鉛鐵)으로부터 銀을 분리해 내는 기법과 그 生産率을 매우 이례적으로 수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매운 재(猛灰)를 채운 무쇠 화로에 납 조각을 넣고 陶器 파편으로 사방을 덮어 화로의 위 아래를 치열한 숯 열기로 가열하여 녹이면 銀이 추출되는데, 그 생산액은 鉛 1斤에서 銀 2錢을 제련해 낼 수 있다는 보고였다.²¹⁾ 양인과 노비에 의해 개발된 은 제련 과정의 기술적 진보 내역이 이렇게 『실록』에 등재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마도 이 연은분리법의 개발이 이후 국내외에 야기한 사회적 파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이렇게 개발된 鉛銀分離法의 일본 전수와 관련하여서는 중종 34년(1539) 윤7월 조정에서 크게 논란이 된 柳緒宗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사헌부는 全州判官 직에 있던 유서종이 과거 金海에 거주하면서 京商들을 불러

18)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閏5月 庚午, 18册, 589쪽.

19)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4月 庚午, 18册, 572쪽.

20) 小葉田淳, 『金銀貿易史の研究』(法政大學出版局, 1976);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創文社, 1981).

21) 『燕山君日記』 卷49, 燕山君 9年 5月 癸未, 13册, 563쪽.

이를 '1근=약 642g, 1전=약 4.12g'으로 환산하면, 鉛鐵 대비 1.28%의 銀 抽出率이었다.

接主시켜 主人 역할을 하며 일본과의 상거래를 중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복장으로 變服시킨 倭人들을 여기에 유인하여 무역을 자행한 행태를 고발하며 그에 대한 推考를 국왕으로부터 裁可 받고 있었다.²²⁾ 그런데 다음 달 8월 사헌부가 그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유서종이 京商 洪業同을 그의 蒜山 亭子에 接主시킨 구체 내역과 더불어, 그가 왜인들과 交通하여 貿入한 다량의 鉛鐵을 자기 집에서 吹鍊하여 銀을 만들고, 또 그 기술을 왜인들에게 傳習시킨 사실을 추가로 제기하여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²³⁾

그리고 10여 일 뒤, 국왕은 왜인에게 연은분리법을 전수시킨 혐의가 一罪, 즉 死罪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추가적인 推考와 加刑을 명하고 있었다.²⁴⁾ 여기에서 언급된 연은분리의 방법이 곧 연산조에 개발된 그 연은분리법이었을 것임은 물론이다.²⁵⁾ 아울러 중종 34년(1539)에 유서종의 과거 행적으로 언급된 이 왜인에 대한 연은분리법 전수 기사와, 日本史에서 16세기의 초기 銀 생산을 주도하였던 石見銀山の 開鑛이 일본의 大永(1521~1526) 연간이고, 특히 그 본격 採掘이 宗丹과 桂壽 등 2명이 1533년 九州의 博多로부터 銀 제련 기술을 도입하여 시작되었다는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를 대비하여 보면,²⁶⁾ 반드시 위 유서종이 아니더라도 중종조 말년 경 조선으로부터 연은분리의 기법을 전수받은 일본 상인이 이 기술을 博多를 거쳐 일본의 銀鑛山 채굴에 적용함으로써 日本銀 생산에 한 劃期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22) 『中宗實錄』 卷91, 中宗 34年 閏7月 丙申, 18冊, 316쪽.

23) 『中宗實錄』 卷91, 中宗 34年 8月 甲戌, 18冊, 325쪽.

24) 『中宗實錄』 卷91, 中宗 34年 8月 癸未, 18冊, 327쪽.

25) 그런데 동 시기를 살았던 魚叔權은 그의 문집 『稗官雜記』에서 연은분리법의 일본 傳授 사실을 두고, 중종 말년 어느 상인이 銀匠을 데리고 倭船이 정박하는 지방에서 가서 왜인들에게 '用鉛造銀法을 전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위 『실록』의 기사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稗官雜記』 1(『大東野乘』 卷 4에 수록)]. 양 기록의 소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산조 조선에서 개발된 연은분리법의 무역 상인을 매개로 한 일본 傳授가 대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 小葉田淳, 앞의 『金銀貿易史の研究』, 109~110쪽.

이 같은 經緯를 거쳐 본격 생산된 일본산 銀의 조선 유입량은 그 생산 초반 부터 이미 매우 큰 규모였다. 중종 35년(1540) 국내 주요 銀產地였던 端川이 속한 함경도의 매년 銀進上額이 1천여 냥이었고, 그나마 이미 단친 鉛脈의 乏絶로 인해 그 해 채은량이 평소의 1/5로 감소하고 있던 조선의 採銀 상황에서,²⁷⁾ 두 해 뒤인 중종 37년(1542) 일본 國王使가 한 번에 소지한 銀량은 무려 8만여 냥^{3천 200kg}에 이르렀고, 다른 商物과 함께 그 공무역 예상액이 9천여 兩[45만 圓]으로 추산될 정도의 막대한 규모였다.²⁸⁾ 이 같은 일본은의 대량 유입 탓에 이렇게 민간에 유포된 왜은을 赴京使行이 다수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 사무역에 종사하는 실태가 중종 35년(1540) 정월 본격 지적되고,²⁹⁾ 또한 동년 7월에는 이렇게 널리 유포된 왜은이 시전에 가득 차 있다는 언급이 조정에서 나오고 있었다.³⁰⁾

이 왜은을 이용한 持銀 赴京 私貿易의 추세는 이제 ‘倍萬於前’의 형세로 거꾸로 그 暴增 양상이 표현되면서 문제되고 있었고,³¹⁾ 이 시기 京外에서 벌어지던 왜은의 거래 상황을 면포의 그것에 비유할 정도로,³²⁾ 그 유통이 도성과 삼포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었다. 洪武帝 이래 지속된 명나라의 海禁 정책과, 특히 1523년 그나마 중국과 열려있던 勘合貿易의 기회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본의 유력 大名 大内氏와 細川氏의 갈등이 寧波의 亂으로 이어지면서(중종 18, 明 嘉靖 2), 마침내는 그 감합무역의 기회마저 폐쇄당한 일본의 대중국 무역의 환경에서,³³⁾ 조선의 연은분리법 도입을 토대로 급격하게 增産되고 있던 일본산 은의 대

27) 『中宗實錄』 卷93, 中宗 35年 9月 戊戌, 18册, 411쪽.

28)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4月 庚午, 18册, 572쪽.

29) 『中宗實錄』 卷92, 中宗 35年 正月 己未, 18册, 374쪽.

30) 주 15와 같음.

31) 『中宗實錄』 卷93, 中宗 35年 7月 丙辰, 18册, 403쪽; 『中宗實錄』 卷94, 中宗 35年 10月 甲申, 18册, 424쪽.

32) 『中宗實錄』 卷95, 中宗 36年 6月 乙丑, 18册, 473쪽.

33) 윤성익, 『명대 왜구의 연구』(景仁文化社, 2007); 민덕기, 「室町幕府시대의 對明 冊封관계의 성립과 변화」 『淸大史林』 6(청대사학회, 1994); 구도영, 「16세기 조선의 '寧波의 亂' 관련자 표류인 송환 - 朝·明·日의 '세 가지 시선」 『歷史學報』 224(역사학회, 2014); 田中

외무역의 販路는 조선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중종 말년 경을 전후하여 일본산 은의 대량 조선 유입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중종 33년(1538) 이후 이와 같이 왜사에 의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日本銀은 이 시기 조선과 일본과의 무역구조 만이 아니라, 조선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상을 야기하고 있었다. 우선은 朝日貿易의 輸出·入品 구성 품목에서 나타난 변화로서, 종래 15세기까지 조선의 면주와 면포 등 織物類와 곡물을 주된 품목으로 하고, 여기에 인삼과 일부의 사치품으로 구성되었던 대일 수출품, 그리고 일본산 銅·鐵과 硫黃 등 광산물에 유구를 거쳐 일본상인들이 轉輸해 왔던 남방산의 胡椒·蘇木·각종 향료 등으로 이루어졌던 대일 수입품의 구성 품목에서, 중종 말년 倭銀의 대거 유입 이래 일본 상인의 무역용 소지 품목에서 일본산의 물품이 종래의 銅鐵에서 銀으로 일거에 대체되고 있었다. 15세기 내내 왜사의 주요 무역용 소지 품목이었고, 연산군 6년(1500)에는 무려 11만 근(약 70ton)에 이를 정도로 대량 유입되어 왔던 倭銅을 대신하여 이제 倭銀이 일본의 대조선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아 갔던 것이다.³⁴⁾

물론 여전히 호초와 소목 등의 남방산 물품과 일본산 광산물 중에서도 유행과 같은 품목이 수입되고는 있었지만, 그 규모나 빈도에서 이제 銀은 압도적인 대일본 무역 수입 품목으로 대두하고 있었다.³⁵⁾ 반면 이 시기 공·사무역에서 주요 수출 품목은 이제 조선산 면포가 일본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그 비중을 증대하여 가고 있었다. 15세기 후반 성종조에 들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일본의 면포 무역 요구는,³⁶⁾ 중종조 이후 16세기에 들어서는 더욱 본격화하여

健夫, 『中世對外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1975); 鄭樑生, 『明日關係史の研究』(雄山閣, 1985).

34) 15~16세기 조선과 일본 사이의 주요 수출·입 품목의 내역과 규모는 앞의 李正守의 논고에 잘 정리되어 있다(「15·16세기의 對日貿易과 經濟變動」, 53~56쪽, 부록 <표 4>~<표 6>).

35) 위와 같음. 특히 56쪽의 <표 6> 참조.

36) 朴平植, 앞의 「15世紀後半對外貿易의 擴大」.

이 같은 면포의 대량 유출에 따른 여러 문제가 조선 사회에서 논란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³⁷⁾ 요컨대 종종 말년 경에 시작된 왜은의 대량 유입 이래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체계는, 그 주요 수출·입 품목의 구성이 종래의 다양한 품목에서 조선의 면포와 일본산 은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조선 면포 對 일본 은'으로 교역 형태가 점차 단일화하는 경향마저 대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왜은의 대거 유입이 초래한 두 번째의 영향은 이로 인한 국내 銀價의 폭락이었다. 일본은의 조선 유입이 본격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종종 7년(1542) 윤5월 사헌부는, 일본에서 은이 생산된 지 채 10여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 널리 유포되어 이미 '賤物' 곧 흔한 물품이 되었다며, 왜은의 대거 유입에 따른 은가의 폭락을 묘사하고 있었다.³⁸⁾ 이 같은 시중 은가의 급격한 하락은 자연 일본과의 공·사무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일본 측의 불만이 澎湃해지고 있었다. 종종 33년(1538) 10월, 당시 小二殿의 왜사가 가져 온 375근의 銀은 그 공무역가가 면포 480여 동(2만 4천여 필)으로 산정되면서 그 은가가 은 1근당 면포 64필, 곧 '은 1냥 = 면포 4필'의 가격이었다.³⁹⁾

그런데 불과 4년 뒤인 종종 37년(1542) 4월 일본 국왕사의 商物에는 왜은이 8만 냥(3천 200kg)에 이르러, 그 처리 방침을 두고 그 해 7월까지 무려 3달 동안 조선 정부와 일본 사신 사이, 그리고 조정 대신들 사이에 심각한 논란이 거듭되

37) 李正守, 앞의 「15·16세기의 對日貿易과 經濟變動」; 李正守, 「16세기 綿布流通의 이중화와 貨幣流通 논의」 『朝鮮時代史學報』 25(조선시대사학회, 2003); 이태진, 앞의 「16세기 국제교역의 발달과 서울상업의 성쇠」.

38)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閏5月 庚午, 18冊, 589쪽.

39) 『中宗實錄』 卷88, 中宗 33年 10月 己巳, 18冊, 226쪽.

그런데 종종 37년(1542) 7월의 조정 논의에서는 이 戊戌年(중종 33, 1538)의 공무역 銀價를 '은 1냥 = 官木 5승 면포 8필로 파악하고 있어, 위 기록과 배치되고 있다(『中宗實錄』 卷 98, 中宗 37年 7月 甲子, 18冊, 600쪽). 상기 조정의 논의 끝에 小二殿使의 공무역 은가가 銀 1냥 당 면포 4필에서 8필로 증액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後者의 공무역 은가가 소이전이 아닌, 이 무술년에 온 또 다른 倭使 大蔭和尚과 一鶚東堂의 所持銀 공무역가로 추정할 수도 있겠다.

고 있었다.⁴⁰⁾ 조선 정부와 일본 사신 사이의 갈등의 핵심은 이 왜은의 공무역 규모와 함께 조선 조정이 제시하고 있던 공무역가에 있었는데, 당시 조선 정부에서 내놓은 무역가는 時價를 반영한 '官木 2필에 은 3냥, 곧 '은 1냥 = 면포 0.67필'의 비율이어서,⁴¹⁾ 그 가격이 4년 전 小二殿使의 공무역가 '은 1냥 = 면포 4필'에 비추어, 무려 1/6 이하로 폭락한 액수였다. 때문에 安心東堂을 비롯한 왜사는 이번 使行이 일본의 國王使임을 내세우며 은 공무역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끊임없이 그 가격을 현재의 時價가 아닌 同王 33년(1538)의 舊價로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은과 상물을 모두 조선에 두고 돌아 가겠다고 통치하는 등 조선 조정을 상대로 온갖 奸巧를 부리고 있었다.⁴²⁾

이로써 확인되는 바, 대일본 공무역을 기준으로 하여 파악되는 銀價는 일본은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던 초창기에 은 1냥 당 5승 면포 4필 또는 8필의 가격에서, 불과 4년만에 그 1/6 또는 1/12의 가격으로 폭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시기를 살았던 魚叔權 또한 그의 『패관잡기』에서 이 같은 사정을 두고, 종종 말년 연은분리법의 일본 傳授 이래 왜인이 銀兩을 다수 가져오게 되면서 京中의 은가가 갑자기 低落하여 1냥의 가격이 단지 惡布 3~4필에 불과하였다며,⁴³⁾ 이 시기의 저와 같은 왜은의 대거 유입에 따른 국내 은가의 폭락 실태를 마찬가지로 전하고 있었다.⁴⁴⁾

40) 논란이 컸던 이 사안의 『실록』 소재 첫 기사는 중종 37년(1542) 4월 20일이었고(『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4月 庚午, 18冊, 572쪽), 마지막 기사는 동년 7월 25일에 나타나고 있어(『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7月 癸酉, 18冊, 603쪽), 그 논란이 조정 내에서 4개월여나 지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1)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6月 乙巳, 18冊, 595쪽.

42)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6月 庚子, 18冊, 594쪽;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6月 辛丑, 18冊, 595쪽;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6月 乙巳, 18冊, 595~596쪽;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7月 庚申, 18冊, 598쪽;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7月 乙丑, 18冊, 602쪽.

43) 『裨官雜記』 1(『大東野乘』 卷 4에 수록).

44) 중종조의 惡布(羅布)가 5승 면포의 1/4의 가치이고, 특히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던 2승 이하 '尺短' 악포의 경우에 그 가치가 더욱 작았음을 고려하면 朴平植, 「朝鮮前期의 羅布流通과 貨幣經濟」, 『歷史學報』 234(역사학회, 2017), 위 『패관잡기』의 惡布價 표기 銀價와

중종 말년 이후 일본은의 대거 유입이 조선 사회에 가져 온 변화의 또 하나는 端川을 비롯한 국내산 採銀의 감소와 중단 사태였다. 연산군 9년(1503) 연은분리법의 개발 이래, 특히 함경도 단천은 조선산 은의 채광지로 각광을 받으며 이미 연산조 부터 때로는 官採의 형식으로,⁴⁵⁾ 때로는 採銀收稅制의 형식으로 민간의 私採를 허용하기도 하면서,⁴⁶⁾ 이후 국내 은 생산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다.⁴⁷⁾ 그리하여 중종 4년(1509) 8월에 이르면 단천을 비롯한 함경도의 採銀處에서 채운을 통해 富侈를 이룬 백성들이 보고되는가 하면,⁴⁸⁾ 동 11년(1516) 8월에는 단천을 경유하여 평안도에 이르는 길이 大路를 이루고 있고, 産銀處 단천의 중국 물품 유통 사정이 도성과 다를 바 없을 정도라는 진술이 나올 정도로,⁴⁹⁾ 銀 생산과 이 은을 이용한 부경 사무역의 盛況이 極盛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중종 21년(1526) 3월에는 이 같은 持銀 부경 사무역의 성행으로 인해 함경도의 산은처가 無窮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銀價가 10배 이상 폭등하는 상황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였다.⁵⁰⁾

그런데 연산조에서 중종 후반에 이르는 이와 같은 단천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 産銀 사정은, 중종 말년 경 日本銀의 대거 유입 이후 매우 극적인 反轉을 보이고 있었다. 중종 35년(1540) 9월 국왕은 함경감사의 啓本에 근거하여 승정원에 내린 傳旨를 통해서, 평상시 1천여 냥(40kg)에 이르는 함경도 進上銀의 액수가 端川銀의 乏絶로 인해 평시의 1/5 수준으로 채은량이 급감한 현실을 거론하며, 貢銀의 액수와 관계없이 채은한 양만큼만 上送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⁵¹⁾ 14년

『실록』 소개 은기는 그 액수가 대략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될 수 있겠다.

45) 『燕山君日記』 卷49, 燕山君 9年 5月 戊子, 13册, 563쪽.

46) 『燕山君日記』 卷52, 燕山君 10年 正月 丙戌, 13册, 590쪽.

47) 申奭鎬, 앞의 「朝鮮中宗時代의 禁銀問題」; 柳承宙, 『朝鮮時代鑛業史研究』(高麗大學校出版部, 1993).

48) 『中宗實錄』 卷9, 中宗 4年 8月 戊子, 14册, 360쪽.

49) 『中宗實錄』 卷26, 中宗 11年 8月 丙子, 15册, 211쪽.

50) 『中宗實錄』 卷56, 中宗 21年 3月 乙巳, 16册, 504쪽.

51) 주 27과 같음.

전인 동왕 21년(1526) ‘無窮’하다고 분석되고 있던 함경도의 産銀處, 그 중 특히 은의 대표 산지였던 端川 銀脈의 고갈 사태가 국왕과 함경감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중종 37년(1542) 6월 국왕은, 마침내 단천 採銀의 5년간 中斷 방침과 민간 채은의 嚴禁 조치를 지시하면서, 그 이유로 근래 왜인들이 계속하여 은을 가져와 무역하는 탓에 國用이 부족하지 않던 실정을 밝히고 있었다.⁵²⁾ 이로써 보면 중종 말년 경의 단천을 비롯한 함경도의 채은량 급감과 단천 채은의 일시적 중단 사태는 그 원인이 銀脈의 乏絶에 따른 결과라기 보다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 해 국내 進上銀의 액수가 1천여 냥인 상황에서, 일본 사신 일행의 단 한 번의 所持銀의 규모가 무려 8만여 냥에 이르고 있던 왜은의 대량 유입에 따라,⁵³⁾ 단천을 포함한 조선 각지 採銀의 收支 採算性이 급격히 악화된 결과였던 것이다.

한편 중종 말년 무렵, 일본은의 유입이 조선 사회에 가져온 최대의 변화는 이들 왜은을 활용한 대중국 사무역의 繁盛이었다. 일본은 대량 유입의 첫 사례였던 중종 33년(1538) 10월, 조선 정부가 375근에 이르는 小二殿 倭使의 소지는 1/3 공무역 방침을 밝히면서 동시에 나머지의 사무역을 전면 불허하였던 까닭은, 富商大賈들이 唐物 무역을 위해 이 왜은을 모두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⁵⁴⁾ 이 같은 조정의 우려는 이후 실제 그대로 나타나, 그 2년 후인 중종 35년(1540) 7월, 왜은을 이용한 사무역의 과정에서 赴京하는 한 사람의 銀 소지량이 3천 냥(120kg)을 내려가지 않는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었고,⁵⁵⁾ 이 같은 왜은을 활용한 대중국 사무역의 暴增 추세를 두고 ‘倍萬於前’으로 묘사하는 실태 분석이 잇따르고 있었다.⁵⁶⁾

중종 36년(1541) 5월 사간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렇게 조선 使行의 赴京 과

52)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6月 戊子, 18冊, 591쪽.

53) 주 19와 같음.

54) 주 5와 같음.

55) 『中宗實錄』 卷93, 中宗 35年 7月 甲寅, 18冊, 403쪽.

56) 주 31과 같음.

정에서 성행하는 持銀 사무역으로 인해, 조선 상인들과 거래하기 위해 명나라의 부상대고들이 중국 南京의 각종 물화들을 遼東에 운수하여 조선의 花銀(중국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곧 조선 상인들이 휴대하고 오던 日本銀-필자 주)과 교역하는 탓에, 赴京 沿路인 요동의 物價가 북경과 다름이 없다는 지경이었다.⁵⁷⁾ 그리고 이 같은 추세는 이후 明宗朝에도 그대로 이어져, 명종 5년(1550) 10월 사헌부는 당대 부경 사행의 持銀 사무역 규모가 적게는 수천 냥에서 많게는 만여 냥(400kg)에 이르러, 이들 사행을 맞는 명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행을 모두 商賈로 인식하여 꾸짖고 질타하는 실태를 고발하고 있었다.⁵⁸⁾

요컨대 중종 말년 경에 본격 시작된 일본은의 대량 조선 유입은, 그렇지 않아도 이 시기 국내산 銀, 특히 단천 은에 기반하여 성행하고 있던 대중국 사무역의 所持銀이 일거에 倭銀으로 대체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이제까지의 朝鮮銀의 명나라 유입 구조가 단기간 안에 日本銀이 조선을 경유하여 중국에 유입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 상인들이 이 왜은과 중국산 사치품을 연계시켜 내는 이른바 中-日을 잇는 中繼貿易의 공간을 전에 없이 확장시키고, 그에 따른 무역 이익의 규모를 크게 증대시켜 가는 교역 환경이 새롭게 조성되어 가고 있었다.

III. 對日貿易의 主導層과 中繼貿易

16세기 대일무역에서 정부 주도의 공무역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무역과 불법의 密貿易을 주도하던 세력은 京商과 開城商人들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당대 京中 富商大賈로 흔히 지칭되고 있던 도성 근거 경상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었다. 중종 4년(1509) 3월 사헌부 감찰 朴諄은 상소를 통해, 당시

57) 『中宗實錄』 卷95, 中宗 36年 5月 庚子, 18冊, 465쪽.

58) 『明宗實錄』 卷10, 明宗 5年 10月 丁亥, 19冊, 724쪽.

경상들이 대일무역에 따른 倍蓰의 이익을 노리고서 熊川의 경우에는 인근의 報平驛에, 그리고 東萊는 城底의 民家に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씩 接主하여 체류하며, 왜인과 禁物을 포함한 불법 무역에 종사하며 ‘無所不爲’하는 실태를 고발하고 있었다.⁵⁹⁾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된 경상도 三浦 인근 지역의 ‘接主’ 행위는, 이 시기 교환경제 유통 체계의 발달 과정에서 전국에서 등장하고 있던 主人層의 존재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곧, 당대 主人層이 국내의 상업의 要地를 배경으로 하여 상인들을 留置하여 숙박을 제공하고, 여기에 덧붙여 이들 상인 소지 각종 物貨를 보관하는 한편 판매의 증개와 알선을 도모하고 있던 실정에서,⁶⁰⁾ 바로 이들 삼포에서 主人 영업을 수행하던 주인층의 집에 경상이 寄宿(接)하여 이들을 主人으로 설정(主)하고 사무역에 종사하는 행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웅천의 薺浦는 삼포의 倭館 소재지 중에서도 가장 번성했던 포구로, 왜인들의 왕래에 따라 각종 물화들이 몰려드는 요지여서,⁶¹⁾ 熊川城의 增改築 건의와 함께 담당 僉使로 武才가 있는 文臣을 가려 보내지는 건의가 끊임없이 계속되던 곳이었다.⁶²⁾ 보령역도 당대 최대의 대일무역 공간이던 이 제포에서 불과 3리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탓에, 왜인과의 사무역과 밀무역이 극심하여 城底의 백성들이 모두 여기에 종사하고 있던 실태여서,⁶³⁾ 더욱 더 위와 같은 主人 영업의 요지였다.

중종 34년(1539) 조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전주판관 柳緒宗의 경우, 그는

59) 『中宗實錄』 卷8, 中宗 4年 3月 丙辰, 14册, 321쪽.

60) 朴平植, 「朝鮮前期의 主人層과 流通體系」, 『歷史教育』 82(역사교육연구회, 2002) 『朝鮮前期 交換經濟와 商人 研究』(지식산업사, 2009)에 수록.

61) 『中宗實錄』 卷82, 中宗 31年 10月 甲申, 17册, 686쪽; 『中宗實錄』 卷82, 中宗 31年 11月 戊辰·癸酉, 17册, 692쪽.

62) 『中宗實錄』 卷8, 中宗 4年 4月 癸亥, 14册, 323쪽; 『中宗實錄』 卷53, 中宗 20年 2月 壬辰·癸巳, 16册, 374쪽; 『中宗實錄』 卷82, 中宗 31年 11月 戊辰·癸酉, 17册, 692쪽; 『中宗實錄』 卷99, 中宗 37年 8月 丁亥, 18册, 607~608쪽.

63) 『中宗實錄』 卷8, 中宗 4年 4月 癸亥, 14册, 323쪽.

한직 관인 신분으로 金海 근처의 蒜山에 정자를 두고 京商 洪業同 등을 여기에 接主시키며 왜인과의 사무역을 중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왜인들에게 鉛銀分離의 기법을 전수시켜 앞의 주인 영업 행태와 더불어 크게 문제되고 있었다.⁶⁴⁾ 중종 36년(1541) 6월에는 국왕이 薺浦 熊川에서 경상과 왜인 사이의 불법 무역을 중개하는 이들 주인층을 추적하여 단속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기까지 하였다.⁶⁵⁾ 그러나 경상들의 삼포 인근 주인층과 연계한 대일 사무역 활동은 이후 중종 최말년인 39년(1544) 9월에도 여전히 조정에서 논란이 될 정도로, 조정의 의지와 달리 쉽게 근절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⁶⁶⁾

한편 이 시기 경상들은 대일 사무역과 밀무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倭通事 職에 활발하게 진출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중종 23년(1528) 8월 국왕은, 왜통사가 모두 市井人인 실태를 거론하며 공무역 과정에서 통사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라는 전교를 내리고 있었다.⁶⁷⁾ 또한 이들 경상들이 도성 倭館의 房守들과도 交結하여 사무역을 도모하자, 조정은 각사의 奴子들 중에서 抄定해 왔던 東平館의 房守를 番上軍士로 대체하고 그 마저도 3일마다 相遞시키도록 조치하기까지 하였다.⁶⁸⁾ 그러나 조선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수를 포함한 동평관의 官屬, 厩庫直이나 使令들이 경상과 연계하여 왜인들과 벌이는 사무역 활동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중종 22년(1527) 11월에는 경상들이 동평관의 庫直 등과 함께 왜인의 물화를 무역하고 나서 代價를 지급하지 못하자, 왜인의 반발을 고려하여 國庫에서 대신 변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다.⁶⁹⁾

더욱이 이 시기 경상들은 왜인과의 무역에 따른 謀利를 목적으로 남방의 武藝職 取才에 적극 응모하여 변방의 군관직에 진출하기까지 하고 있었다. 중종 4

64) 주 22, 23, 24와 같음.

65) 『中宗實錄』 卷95, 中宗 36年 6月 丙子, 18冊, 477쪽.

66) 『中宗實錄』 卷104, 中宗 39年 9月 壬戌, 19冊, 137쪽.

67) 『中宗實錄』 卷62, 中宗 23年 8月 甲子, 17冊, 30쪽.

68) 『中宗實錄』 卷91, 中宗 34年 6月 辛丑, 18冊, 303쪽.

69) 『中宗實錄』 卷59, 中宗 22年 11月 辛巳, 16冊, 606쪽.

년(1409) 5월 대사헌 權弘은, 당시 防禦가 긴급한 북방 지역과 달리 남방은 그 임무가 수월한 탓에, 그리고 북방은 謀利의 기회가 적고 남방은 그 기회가 많은 까닭에, 지금 남방의 武藝 취재에 응하는 자들이 모두 市井人인 현실을 문제 삼고 있었고, 국왕 또한 그 같은 우려에 동의를 표시하고 있었다.⁷⁰⁾ 이 같은 인식은 그 다음 달에도 그대로 이어져, 盧公弼 또한 남방의 武藝 萬戶들이 모두 市井의 무리들이어서 방어의 업무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牟利의 일에 종사하는 실태를 고발하고 있었다.⁷¹⁾ 15세기 후반 경상들이 북방의 5鎰을 비롯한 軍官직에 진출하여 ‘興利軍官’으로 지칭되며 野人과의 사무역에 치중하던 실태가,⁷²⁾ 이 시기 남방의 대일무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16세기 경상들의 대일 사무역과 불법 밀무역 활동은 日本銀의 대량 유입이 있기 전에 이미 만연하고 있었다. 중종 9년(1514) 11월 사헌부가 당시 경상도 兵使 尹熙平의 馳啟에 근거하여 올린 보고에 따르면, 지난 庚午倭變 곧 삼포왜란(중종 5, 1510) 이후 일본과의 교역 단절에 따라 도성 시전에서 매우 귀한 물품이 되었던 銅鐵이 壬申約條(중종 7, 1512)의 체결이 있고 나서 얼마 후인 당시, 이미 도성 시전의 동철 過多 현상이 이전과 차이가 없을 정도라는 실태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⁷³⁾ 이 같은 상황이 당대 對日 銅鐵 무역에서 공무역이 적고 사무역이 훨씬 많던 현실에서,⁷⁴⁾ 경상의 활발한 사무역 활동의 결과였음은 물론이다. 중종 25년(1530) 2월에도 사간원이 富商大賈들이 海島에 들어가 倭物을 潛貿易한 사건을 문제 삼고 있었는데, 이들을 推考한 경상감사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은 경종의 상인들로서 남방을 왕래하며 왜인들과 불법 사무역을 일삼고 있었고, 사간원은 이들 경상의 밀무역 활동을 당대의 ‘大患’으로 인식하고 있었다.⁷⁵⁾

70) 『中宗實錄』 卷8, 中宗 4年 5月 己未, 14册, 337쪽.

71) 『中宗實錄』 卷8, 中宗 4年 6月 辛酉, 14册, 338쪽.

72) 朴平植, 앞의 「15世紀 後半 對外貿易의 擴大」.

73) 『中宗實錄』 卷21, 中宗 9年 11月 戊辰, 15册, 40쪽.

74) 『中宗實錄』 卷54, 中宗 20年 5月 乙酉, 16册, 423쪽.

75) 『中宗實錄』 卷67, 中宗 25年 2月 己卯, 17册, 195쪽.

중종조 말년 일본은의 대거 유입 이후, 이 같은 경상도의 대일무역 활동은 더욱 熾盛해 지고 있었다. 중종 36년(1541) 5월 金安國 등 조정의 대신들은 삼포에서 벌이는 경상도의 사무역과 밀무역 활동의 실태를 문제 삼으면서, 구체적으로 부산포와 제포에서 경상도와 格倭들이 '輻輳'의 형세로 來集하여 불법 무역을 행하던 상황을 거론하고 있었다.⁷⁶⁾ 그 해 11월에는 熊川禮房 朱相孫이 왜인의 白銀 81근과 山獺皮 80승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왜인들이 이를 도성에서 예조에 고소한 사건이 벌어졌다.⁷⁷⁾ 그런데 70여 명의 사건 관련자 중에 도성에 거주하는 阿伊孫이 포함된 것에서 확인되듯이, 이 사건 또한 경중의 부상대고들이 웅천 향리들과 연계하여 벌인 불법 사무역의 과정에서 야기된 사건이었다.

경상도의 활발한 대일무역 활동은 이후 명종조에도 그대로 이어져, 명종 2년(1547) 6월에는 蛇梁嶺 倭變(중종 39, 1544)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하던 왜인들의 밀무역 상대로 경상도가 구체적으로 特記되고 있었다.⁷⁸⁾ 이들 경상도의 왜인과의 사무역과 밀무역 중에는 상호간에 거래를 위한 文記가 작성될 정도로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명종 3년(1548) 8월 도성으로 상경 중인 倭使 일행과 中路에서 벌인 사무역과 관련하여 도성에서 체포된 5명의 상인 집에서, 왜인의 圖書 書契와 함께 무역 관련 買賣文書가 적발되었던 사례가 그와 같은 실태를 또한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⁷⁹⁾

한편 16세기의 대일무역 부문에서 이들 경상도와 더불어 사무역, 밀무역을 주도하고 있던 또 다른 조선 상인 집단은 바로 개성상인들이었다. 중종 21년(1526) 3월 사헌부 執義 韓承貞은, 당시 시중의 銀價가 10여 배 이상 폭등하는 가운데 持銀 사무역이 성행하던 실태를 지적하면서, 한편으로 白黃絲·絲紬·藥材 등을 이용한 왜인과의 무역에서 특히 興利하고 있던 상인들로 경상도와 더불어 이들

76) 『中宗實錄』 卷95, 中宗 36年 5月 乙卯, 18冊, 468쪽.

77) 『中宗實錄』 卷96, 中宗 36年 11月 乙巳, 18冊, 524쪽.

78) 『明宗實錄』 卷5, 明宗 2年 6月 丙申, 19冊, 516쪽.

79) 『明宗實錄』 卷8, 明宗 3年 8月 癸丑, 19冊, 608쪽.

개성상인들을 특정하고 있었다.⁸⁰⁾ 삼포에서 대일무역과 관련하여 활약하는 商人群 중에서 앞의 경상과 더불어 개성상인들이, 그 전국적인 상업 조직과 多大한 資産을 바탕으로 이 시기 대일무역을 주도해 가고 있던 실정을 잘 반영한 분석이라 하겠다.⁸¹⁾

16세기 경상과 개성상인 등 당대 조선의 최대 상인 집단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던 대일무역에서, 이들 조선 상인들은 자신들의 대일무역 활동을 대중무역과 연계시키는 中繼貿易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다시 말해 일본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여러 물화들을 赴京 使行 사무역을 비롯한 대중국 무역에서 활용하고, 또한 중국산 수입품을 대일무역을 통해 다시 일본 상인에게 처분함으로써 그에 따른 差益을 거두는 무역의 형태였다. 이 같은 조선 상인들의 중계무역 활동은 왜인의 대량 유입이 있기 전부터 이미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예컨대 중종 20년(1525) 11월 經筵에서 특진관 成運은, 당시 일본의 사신들이 조선의 각종 藥材와 함께 唐物들을 집중 무역해 가고 있던 실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⁸²⁾

이 시기 대규모 資産을 동원해야 가능했던 이 같은 중계무역의 구체 정황을 중종 23년(1528) 2월의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하여 보자. 이 때 甲士 李世孫의 고소에 근거하여 형조가 국왕에게 올린 보고에 따르면, 1) 金仲良·金有光·朱義孫·李守福·安孝孫 등 5인이 각각 木縣 500동씩을 出資하여 총 2천 500동[12만 5천 필] 규모의 '同務'⁸³⁾ 관계를 결성하고, 2) 이들 同務인들이 왜통사들과 연계하여 禁物金銀으로 추정·필자 주의를 매입하였으며, 3) 이렇게 마련한 黃金 39 兩과

80) 『中宗實錄』 卷56, 中宗 21年 3月 乙巳, 16册, 504쪽.

81) 조선전기 개성상인들의 대외무역과 관련한 활동 전반에 관하여는 다음 拙稿 참조. 朴平植, 「朝鮮前期 開城商人의 商業活動」 『朝鮮時代史學報』 30(조선시대사학회, 2004) 『朝鮮前期 交換經濟와 商人 研究』 (지식산업사, 2009)에 수록.

82) 『中宗實錄』 卷55, 中宗 20年 11月 丁卯, 16册, 467쪽.

83) 조선전기에는 상인들 사이에서 각자의 資産을 合資하여 벌이는 '同財殖貨'의 행위를 두고 '作同務', 그리고 이 같은 관계의 相互를 '同務人'으로 지칭하였다(『世祖實錄』 卷38, 世祖 12年 正月 丙午, 8册, 1~2쪽; 『中宗實錄』 卷92, 中宗 34年 10月 丁亥, 18册, 354쪽).

銀 74兩9錢을 赴京 通事 李繼詮에게 보내 唐物 무역을 기도하였고, 4) 이 과정에서 이세손을 執筆로 鄭夫叱成을 保證으로 내세워 거래 文書를 작성하였으며, 5) 朴繼孫·玉豆應知·安世良·張世昌 등은 왜의 鉛鐵을 黃允光의 집으로 보내 7~8 일에 걸쳐 銀을 제련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거론되어 문제되고 있었다.⁸⁴⁾

물론 이세손의 이 고소 사건은 의금부의 추고 끝에 그의 誣告 행위로 종결되었지만,⁸⁵⁾ 당대 실제 벌어지고 있던 상인들 사이의 자본 합작 관행, 중일을 잇는 중계무역의 구조와 실태 등을 前提로 하여 무고가 구성되었던 만큼, 위 1)~4)에 이르는 경상들의 中繼貿易에 따르는 구체 行態는 이 시기 商業界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아직 일본은 이 본격 유입되기 전이었던 이 중종 23년(1528)에 위 5)에서 보듯이, 일본으로부터 鉛鐵을 質入하여 이의 鉛銀分離 제련 과정을 거쳐 銀을 생산해 내고 있던 조선 상인들의 활동 또한 매우 주목된다. 아직 이 기술을 모르고 있던 일본으로부터 연철을 무입하여 銀을 분리해 내고, 이를 다시 대중 사무역을 통해 처분하는 경상들의 활동을 통해, 이 시기 중일을 잇는 중계무역의 行程에서 조선 상인들이 보이던 적극적인 商利 확보 노력을 잘 확인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 시기 대일무역에서 이처럼 경상을 비롯한 조선 상인들이 일본의 唐物 수요를 중개해 내면서 중계무역을 벌일 수 있었던 조건은 일본이 봉착한 대중국 교역의 현저한 制限 여건에서 마련되고 있었고,⁸⁶⁾ 당대 조선 조정 또한 이 같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중종 31년(1536) 10월 朝講 자리에서 영사 金安老는, 당시 加德島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왜인들과의 밀무역을 통해 藥材와 唐絲와 같은 물화들이 모두 일본으로 들어가는 실태를 전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왜인들이 중국에 들어가 직접 行販을 하였는데 大寧府에서의 作賊寧波의 亂, 중종 18,

84) 『中宗實錄』 卷60, 中宗 23年 2月 壬子, 16册, 631쪽; 『中宗實錄』 卷60, 中宗 23年 2月 辛酉, 16册, 634쪽.

85) 위와 같음.

86) 16세기 조선과 중일을 포함한 東아시아 국제교역의 환경에 대한 구체 내용은 이하 本稿의 4장 참조.

1523년 이후 중원과 交接할 수 없게 됨에 따라 唐物을 조선으로부터 轉買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산 물화와 더불어 중국산 唐物들이 모두 일본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되었음을 확인하며, 그에 대한 禁斷을 請하고 있었던 것이다.⁸⁷⁾

중종 18년(1523)에 중국 寧波에서 벌어진 倭使들 사이의 作亂과, 이후 그나마 제한적으로 明으로부터 허용 받고 있던 勘合貿易의 기회마저 봉쇄되면서,⁸⁸⁾ 일본이 조선 상인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중국산 물화들을 求得할 수 없었던 당대의 여건을 조선 조정 또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김안로는 그 실태를 唐絲와 같은 당물의 중계무역의 사례로서 거론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 같은 조선 상인 특히 船商들의 중일을 잇는 중계무역 사례는, 중종 28년(1533) 6월 扈隸 신분의 경상 李山壽가 벌인 중국과 일본을 연계한 선상 밀무역 행태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었다.⁸⁹⁾

일본은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중종 말년 이후, 조선 상인들의 일본을 상대로 한 중계무역 행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중종 34년(1539) 10월 조정에서는 내수사 書題였던 朴守榮의 대일 사무역 활동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었다. 이때 내수사 田地의 打量을 명분으로 경상도 三嘉에 내려갔던 박수영은 다수의 絲段·白絲 등의 당물을 가지고 가서 제포첨사에게 청탁하여 吉禮의 소용 물품이라 사칭하고 왜인들의 銀을 공공연하게 무역하였고, 또한 여러 同務人 곧 자본을 合資한 경상들과 연계하여 이 왜인을 赴京하는 使行 편에 부치고 있었다.⁹⁰⁾

앞서 살펴 본 李世孫의 무고 사건에서 상정되었던 부상대고들의 자본 합작을 통한 '作同務' 실태, 이렇게 조성한 대규모 자산을 바탕으로 한 중일 사이의 중계무역의 행태가 당대 현실에서 그 實際로 구현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경상들의 중계무역 행위가 내수사 등 왕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지던

87) 『中宗實錄』 卷82, 中宗 31年 10月 乙酉, 17册, 686~687쪽.

88) 주 1, 33의 諸논고 참조.

89) 『中宗實錄』 卷75, 中宗 28年 6月 庚辰, 17册, 437쪽.

90) 『中宗實錄』 卷92, 中宗 34年 10月 丁亥, 18册, 354쪽; 『中宗實錄』 卷92, 中宗 34年 10月 戊子, 18册, 355쪽.

서 더욱 크게 문제되고 있었던 것이다.⁹¹⁾ 조선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중국산 綵段과 白絲를 일본산 銀과 교역시킴으로써 그 差益을 실현시키는 전형적인 중계무역의 형태였다.

경상을 비롯한 조선 상인들의 倭銀을 매개로 한 중계무역은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중종 37년(1542) 무려 8만여냥의 은을 소지하고 왔던 일본국 사신 安心東堂의 공무역액은 官木으로 1천 200동(6만 필)에 이르렀고, 또 사무역이 그 배에 이르러 대가로 받은 조선산 면포가 三浦에 언덕과 산처럼 쌓여 있는 실정이었다. 당시 예조판서 金安國을 찾아 온 제포침사 徐壽千에 따르면, 비록 크다 하더라도 총 3~4척에 불과한 일본 국왕사의 선박에 이를 다 실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때문에 서수천은 왜인들이 반드시 이 官木을 삼포에 내려 온 경상들의 白絲와 段子 등 무계와 부피가 가볍고 적은 물화들과 교역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삼포에서 이들 경상의 활동을 엄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다.⁹²⁾ 여기에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경상들이 왜인과의 무역을 위해 가지고 온다는 白絲와 段子들이 모두 중국산의 수입 물품이었음은 물론이고, 이 같은 교역 형태는 곧 일본산 은과 중국산의 사치품이 조선 상인에 의해 중개되는 전형적인 중계무역의 형태였다.

16세기에 이처럼 대일무역을 주도하고 있던 조선 상인들이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계무역에 적극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 兩國 사이 물화의 가격차였다. 예컨대 중종 말년 대거 유입되면서 조선에서 그 가격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약 1/6 수준으로 폭락하였던 국내의 銀價는,⁹³⁾ 그 결과 이들 銀의 최종 귀착지였던 중국의 은가에 비해 매우 저렴하였다. 명종 즉위년(1544) 11월 영의정 尹仁鏡과 좌의정 李諱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왜은의 유입에 의해 국내의 銀이 충분한

91) 『中宗實錄』 卷92, 中宗 34年 11月 己未, 18冊, 363쪽.

92)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7月 乙丑, 18冊, 603쪽.

93) 중종 33년(1538) 공무역가 기준으로 銀價는 은 1냥 당 면포 4필에서, 이후 동 37년(1542)에 면포 0.67필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었다(앞의 주 39, 41 참조).

상황에서 중국에서 銀 2錢에 불과한 白苧布 1필의 가격은 국내에서 官木 10필에 해당하며, 이를 은으로 환산할 경우 적게는 3~4냥 많게는 5냥에 이르렀다.⁹⁴⁾ 따라서 이를 銀價로 환산할 경우, 중국의 은가는 조선의 그것에 비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5배에 이르는 高價였던 셈이다.

결국 이 같은 일본과 조선 그리고 중국 사이의 현실 銀價의 차이를 배경으로, 조선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倭價의 일본은을 매입하여 이를 赴京 사행이나 불법의 사무역을 통해 명나라에서 高價로 매도하고, 반대로 중국 현지의 白絲나 段子 등의 高價 輕量의 唐物을 무입하여 다시 이를 국내에서 일본 상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들 양국 상인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二重의 무역 이익을 획득하고 있었다. 일찍이 15세기에 조선 상인들이 중일 사이의 중계무역 물품으로 주로 남방산 胡椒를 활용하고 있었다면,⁹⁵⁾ 이제 16세기에 들어서 특히 중종 말년의 倭銀의 대거 유입 이후에는, 일본산 銀이 호초를 대신하여 조선 상인들의 중계무역 물품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⁹⁶⁾ 그리고 조선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이 연결되는 東아시아 국제교역에서 이처럼 각국 상인의 처지와 정부의 通商 정책이 대치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그리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무역을 둘러싼 葛藤 구조가 형성되고 또 작동하여 갔다.

94) 『明宗實錄』 卷2, 明宗 卽位年 11月 丙子, 19冊, 366쪽.

95) 朴平植, 앞의 「15世紀 後半 對外貿易의 擴大」.

96) 일본은의 대량 유입 이후에도 倭使들의 남방산 胡椒 所持와 무역 요구는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서(『明宗實錄』 卷5, 明宗 2年 3月 癸丑, 19冊, 488쪽; 『明宗實錄』 卷5, 明宗 2年 4月 己亥, 19冊, 497쪽; 『明宗實錄』 卷12, 明宗 6年 10月 戊寅, 20冊, 48쪽), 이를 활용한 중계무역 또한 여전히 계속되었을 개연성은 높다. 다만 그 비중에서 15세기 이래 호초의 위상을 이제 倭銀이 대체하게 되었던 것이다.

IV. 東아시아 交易環境과 對日貿易의 葛藤

16세기 대일무역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역 관계였지만, 이 양국의 정치 사회적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한편으로, 중국과 유구 등을 포함한 東아시아의 교역 환경 속에서 물화가 거래되고 상인들이 왕래하고 있었다. 특히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시기 조선 상인들의 중계무역이 이 같은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분석과 정리는 16세기 대일무역의 추이와 갈등 양상의 입체적 조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선행 과제라 하겠다.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중심에 있던 중국은 洪武帝의 明 개창 이래 조선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국제 관계를 朝貢과 冊封의 체제로 수립하는 한편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海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朝貢貿易을 유일한 교역 질서로 주변 나라에 강제하고 있었고, 이 같은 방침을 16세기에도 큰 변동 없이 정책으로서 지속해 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16세기에 들어서면 이들 東아시아만이 아니라 南·西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 더 나아가 이 무렵 이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한 포르투갈·스페인·네덜란드 상인들을 매개로 구축되기 시작한 全世界 차원의 '상업의 시대' '교역의 시대'가, 이들 조선과 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권역에서도 본격 시작되고 있었다.⁹⁷⁾

그런데 조선은 전통적인 明 중심의 동아시아 교역체계 곧 조공무역의 체계에서, 중국 주변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유리한 교역 여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일본이 10年 1회, 대부분의 주변국이 3年 1회, 그리고 琉球가 2年 1회의 對明 定期 使行을 허용받고 있던 데 비해, 조선은 국초 이래 1年 3회의 부경 사행을

97) 서구와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기왕에 數多하게 축적되어 왔다. 본고에서 이미 인용한 참고 논저는 그 최소한의 것들이다(주 1, 20, 33의 譜念고). 특히 이와 관련하여 일본 학계의 이 시기 동아시아 交易史 이해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16세기 對明貿易의 특징을 정리한 구도영의 논문이 유의된다(앞의 「16세기 동아시아 질서에서 본 조선 對明貿易의 특징과 위상」).

과견할 수 있었고,⁹⁸⁾ 여기에 덧붙여 進賀·奏聞使 등 수많은 비정기 사행의 과견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초 이래 17세기 중반 仁祖朝까지 총 1천 200여 회를 상화하는 사행을 북경에 과견하였고, 그 매년 과견 비율은 15세기 성종조까지는 매년 평균 약 6.6회, 그리고 16세기 이후에도 매년 평균 약 3.5회의 정기 비정기 사행을 과견하고 있었다.⁹⁹⁾ 대명 사행의 과견이 곧 무역의 기회였던 상황에서 조선이 누리고 있던 이 같은 국제교역의 여건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 상인들이 이 시기 대일무역에서 중계무역을 통해 商利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였다.¹⁰⁰⁾

한편 조선 국가는 국초 이래 농업 중심의 ‘抑末’ 정책을 경제 분야의 각종 施策에서 확고하게 천명하여 왔고, 위와 같은 국제 정세와 연동되어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일무역과 관련하여서는 ‘交隣’의 원칙 하에 三浦를 개항하여 교역을 허용하되, 授圖書·書契·文引 등의 제도와 癸亥約條를 통해 과견 使行과 歲遣船의 숫자 등을 매우 세세하게 규정하고 이의 遵行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무역 부문에서는 대중 무역에서와 마찬가지로 15세기 후반 성종조 이후, 그 양적 성장이 두드러지게 노정되고 있었다.¹⁰¹⁾

동철·유황을 비롯한 일본산 광물과 남방산의 호초·소목, 각종 향료 등과 조선산 직물과 곡물 등이 교역되던 조선과 일본 사이의 대일무역은, 특히 이 시기

98) 구도영, 앞의 「16세기 동아시아 질서에서 본 조선 對明貿易의 특징과 위상」, 196쪽 (표 1) 참조.

99) 朴成柱, 「高麗·朝鮮의 遣明使 研究」(東國大 博士學位論文, 2004).

100) 明 왕조 시기, 일본이 進貢 사절을 중국에 보낸 횟수는 총 19회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寧波의 亂(중종 18, 1523) 이후 이를 주관하였던 大內氏의 몰락과 함께 1547년(명종 2)에 중단되고 말았다(주 1, 33의 논고 참조). 陸路를 이용한 조선의 사행에 비해 일본의 조공 이 선박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그 규모가 좀 더 컸을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행 곧 무역 기회의 큰 격차가 이 시기 동아시아 교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101) 李鉉淙, 앞의 『朝鮮前期 對日交涉史研究』; 朴平植, 앞의 「15世紀 後半 對外貿易의 擴大」.

에 들어 일본 상인의 조선 면포에 대한 수요와 청구가 급증하면서 크게 신장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성종 중반 이후 그 回奉額이 한 해에 50만 필을 내려가지 않는다는 정도로 확대되었고, 이 같은 추세는 대일무역의 증가를 담당하던 삼포 恒居倭人の 숫자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세종조 계해약조에서 60여호로 규정되었던 삼포왜의 숫자는 성종 말년 경에 이르면, 규정보다 10여 배 이상 늘어 500여 戶, 3천여人を 상회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⁰²⁾

이 같은 대일무역의 상황에서 反正 후, 정치 사회의 일대 革新을 천명하고 있던 중종 정부는 廢朝의 失政 掇弊 차원에서 대외무역 일반에 대한 통제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일무역과 관련하여서도, 중종 3년(1508) 8월 영상과 우상, 그리고 호조와 예조관서 등이 지난 庚申年(연산군 6, 1500)에 왜인들이 가져온 동철 11만 5천 근 중에서 이때까지 代價 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2/3 분량의 銅鐵價를 다시 지난 庚申年價의 면포로 지불해 달라는 왜인들의 요청에 대해, 丙寅年(중종 원년, 1506)에 이어 거꾸 불허 방침을 통보하고 있었다.¹⁰³⁾ 交隣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왜 동철의 대량 유입에 따라 국내의 동철 가격이 하락하자, 이를 일본과의 공무역 가격에 반영하려 하였고, 대마도가 이를 거절하자 단호하게 공무역 불허 방침을 통보하였던 것이다.

대일무역에 대한 중종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응은 이후 불법 사무역과 밀무역의 중심지였던 三浦에 대한 시책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예컨대 중종 4년(1509) 3월에는 삼포 왜인의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삼포 지역의 守衛를 堂上官 급으로 격상하여 파견하는 방안을, 鹽浦와 東萊에 이어 薺

102) 朴平植, 앞의「15世紀後半對外貿易의擴大」.

103) 『中宗實錄』卷6, 中宗3年8月丙子, 14册, 272쪽.

庚申年의 왜 동철 11만 5천 근 중의 1/3은 그 해에 면포 1匹半 당 동 5斤半의 가격으로, 곧 면포 1필당 동 약 3.7근으로 대가가 지불되었고, 이후 壬申年(연산군 8, 1502)에 그 1/3에 대해 면포 1필당 동 5근의 가격이 제시되었으나, 왜사가 종전 경신년의 가격을 주장하며 대가 수령을 거부한 바 있었다. 대마도는 이 같은 동철가의 경신년 舊價 지금 요청을 반정 직후인 중종 원년(1506)에도 다시 해 온 바 있었다.

浦가 소재한 熊川에도 새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었다.¹⁰⁴⁾ 그리고 다음 달에는 삼포의 倭里, 곧 항거왜인들의 거주 지역에 대한 단속을 통해 이들의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방안, 제포 인근 報平驛의 驛吏들과 瓮川현의 城底 백성들의 왜인들과의 밀무역을 예방하기 위해 보평역을 혁파하여 인근 역에 병합시키고, 瓮川성을 새로 신축하여 성 밖 백성들을 성 안으로 이주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¹⁰⁵⁾ 모두 삼포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왜인과의 불법 무역을 근본에서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이었다. 북방과 달리 남방 지역의 武藝 取才에 상인들이 대거 응모하여 변방의 軍官職을 사무역 활동을 위해 활용하는 실태가 거론되며, 그에 대한 단속과 대처가 조정에서 논의되었던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¹⁰⁶⁾

中宗反正 이후 이처럼 삼포를 중심으로 한 대일무역에 대한 조선 국가의 통제와 관장의 提高 노력이 경주되고 있을 즈음인 중종 5년(1510) 4월, 삼포의 왜인들과 대마도가 연계, 擧兵하여 薺浦와 釜山浦의 성을 함락시킨 이른바 三浦倭亂이 발발하고 있었다.¹⁰⁷⁾ 이 왜란의 직접적인 발발 원인은 이 사태를 처음 중앙에 보고한 경상수도 병마절도사 金錫哲의 장계에서 이미 파악되어 있듯이, 1) 부산포 첨사의 鹽·瓦 제조용 吐木의 왜인 督納, 2) 瓮川 현감의 왜인 興利 금지와 倭料 미지급, 3) 제포 첨사의 왜인 海採 시의 射官 과견 불허와 4인의 왜인 誤認 殺害 등이 作亂의 동기로 거론되고 있었다.¹⁰⁸⁾

104) 『中宗實錄』 卷8, 中宗 4年 3月 甲辰, 14冊, 316쪽.

105) 『中宗實錄』 卷8, 中宗 4年 4月 癸亥, 14冊, 323쪽.

106) 『中宗實錄』 卷8, 中宗 4年 5月 己未, 14冊, 337쪽; 『中宗實錄』 卷8, 中宗 4年 6月 辛酉, 14冊, 338쪽.

107) 李鉉淙, 앞의 『朝鮮前期 對日交涉史研究』; 村井章介(이영 역), 『중세 왜인의 세계』(도서출판 소화, 2003).

108) 『中宗實錄』 卷11, 中宗 5年 4月 癸巳, 14冊, 422~423쪽.

이 같은 삼포왜란 발발의 직접적인 동기는 이후 대마도의 書契나, 사건 조사를 위해 과견된 敬差官의 보고에서도 大同小異하게 다시 거론되고 있었다(『中宗實錄』 卷11, 中宗 5年 4月 乙未, 14冊, 423~424쪽; 『中宗實錄』 卷11, 中宗 5年 4月 丙申, 14冊, 425쪽; 『中宗實錄』 卷11, 中宗 5年 4月 壬寅, 14冊, 431쪽).

그런데 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의 馳啟를 두고 벌어진 조정의 첫 논의 자리에서 영의정 金壽童은 이 사태의 배경을 두고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영상은, “倭奴들이 憤을 품은 지가 이미 오래인데, 지금 마침내 變이 일어났다.”¹⁰⁹⁾며, 위의 절도사의 보고에서 거론된 구체적인 사태 원인보다 좀 더 포괄적인 배경에 유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인식은 며칠 뒤에 作亂의 주역이 東萊縣令에게 보낸 서계에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었다. 삼포왜란을 주동한 對馬島 代官 宗兵部 盛親은, 조선과 대마도 사이의 和親의 견고한 定約이 최근 10년 사이에 每事에서 變換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⁰⁾

앞의 영의정 김수동의 사태 파악과 더불어 作亂 주역의 이 같은 인식은, 요컨대 중종 5년(1510)의 이 庚午倭變이 결코 당시 삼포를 관장하는 지방관의 부당한 왜인 대우나 일시적인 대처에서 비롯된 사변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대일무역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동아시아 국제교역 환경에서의 處地, 그리고 반정 이후, 15세기 후반 이래 대일무역의 확대 국면에도 불구하고 세종조 癸亥約條에서 규정된 기본 章程을 준수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다시 제고하려 하였던 중종 정부의 대일본 무역 정책을 배경으로 발생한 왜인들의 作亂이 바로 삼포왜란이었던 것이다.

16세기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환경에서 일본이 처하고 있던 위치와, 반정 이후 중종 정부가 ‘抑末’의 국가 정책을 더욱 원칙에서 강행하던 시점에서, 그와 같은 국제교역 상의 불리를 挽回하고자 하였던 일본대마도의 시도로서 삼포왜란은, 이처럼 실패로 귀결되고 만다. 그리고 2년 뒤인 중종 7년(1512) 壬申約條의 체결을 통해, 대마도주의 歲遣船과 歲賜米太가 반감되고 50隻→25隻, 200石→100石, 특송선의 파견과 加德島 來泊이 불허되는 한편으로, 여러 기왕의 授職·授圖書者에 대한 세견선과 賜米 조치가 철회되거나 조정되어 가자, 이로써

109) 『中宗實錄』 卷11, 中宗 5年 4月 癸巳, 14冊, 423쪽.

110) 『中宗實錄』 卷11, 中宗 5年 4月 乙未, 14冊, 423~424쪽.

조선과의 무역에서 일본 특히 대마도가 입은 피해는 적지않은 것이었다.¹¹¹⁾

그러나 이 시기 왜인들의 공급 物貨 중에는 銅鐵과 같이 또한 조선 사회의 필수품도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朝·日 교역의 정상화를 위한 일본 정부와 대마도의 집요한 외교적 노력이 덧붙여짐으로써, 중종조의 대일무역은 反正 직후 발생한 삼포왜란의 波瀾에도 불구하고 이내 이전의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었다. 임신약조의 체결 2년 후인 중종 9년(1514) 11월 사헌부는, 庚午倭變 [三浦倭亂] 이후 매우 귀한 물품이 되었던 銅鐵이 그 사이 漸增한 상인들의 사무역의 결과로 지금 도성 내 시전의 동철의 많음이 예전과 다름이 없다는 분석을 내보이고 있었다.¹¹²⁾ 일본의 국가 차원에서도, 특히 衣食의 기초 자원을 조선에 절대 의존하고 있던 대마도의 처지에서도, 그 葛藤 양상에도 불구하고 조선과의 교역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일무역의 再開는 必至의 결과였다 하겠다.

이후 일본으로부터 임신약조의 개정을 통한 通商 기회의 확대 노력이 계속 되는 가운데,¹¹³⁾ 한편에서는 일본과의 공무역에서 조선이 지불해야 할 綿布의 過多와 그에 따른 재정 문제가 거듭하여 논란이 되고 있었다.¹¹⁴⁾ 특히 이 시기 왜인 공무역가로 우선 충당되고 있던 경상도 소재 면포의 부족 사태가 우려되면서, 왜와의 공무역을 시중 물품가에 맞추어 引下 調定하려는 조선 정부와 高價로 결제받았던 舊價를 고집하는 倭使 사이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형국이었다.¹¹⁵⁾ 그리고 중종 말년 경 日本銀의 대거 유입이 있기 전부터 이처럼 일본 國王使를 비롯하여 九州 지역의 여러 巨賈, 그리고 대마도주가 조선과의 공·사무역에 매진

111) 주 107과 같음.

112) 주 73과 같음.

113) 『中宗實錄』 卷21, 中宗 10年 3月 甲戌, 15冊, 65쪽; 『中宗實錄』 卷45, 中宗 17年 7月 己酉, 16冊, 140쪽; 『中宗實錄』 卷54, 中宗 20年 4月 癸卯, 16冊, 408쪽.

114) 『中宗實錄』 卷48, 中宗 18年 7月 甲午, 16冊, 249쪽; 『中宗實錄』 卷55, 中宗 20年 9月 壬戌, 16冊, 451쪽; 『中宗實錄』 卷55, 中宗 20年 9月 辛巳, 16冊, 455쪽; 『中宗實錄』 卷55, 中宗 20年 10月 癸巳, 16冊, 459쪽.

115) 『中宗實錄』 卷65, 中宗 24年 2月 戊子, 17冊, 103쪽.

하였던 배경에는, 일본 국내에서 戰國時代의 본격 전개에 따라 각 大名 세력 사이에 領國의 軍備 확장을 위한 경제 진흥책의 일환으로 대외무역에 적극 나서고 있던 風潮가 자리하고 있었다.¹¹⁶⁾

그런데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환경에서 일본 내 각 大名 세력들의 海外貿易에는 불리한 여건이 거듭하여 추가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시기 明나라는 '10年 1貢'의 勘合貿易의 형태로 일본의 進貢과 무역을 허용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중종 18년(1523) 감합무역의 기회를 둘러싼 大內氏와 細川氏 간의 충돌이 寧波의 亂으로 이어지면서, 마침내는 이 감합 무역마저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다.¹¹⁷⁾ 이 시기 조선 정부 또한 이 같은 情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중종 31년(1536) 10월 영사 金安老는 일본이 명나라에서의 作賊 이후 대중국 직접 교역이 불가능해지면서, 대신 唐絲 등의 중국 물화를 조선 상인을 통해 賈入해 가던 실태를 전하고 있었다.¹¹⁸⁾ 이는 앞의 3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조선 상인에게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계무역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하는 조건이었고, 조선의 물화만이 아니라 唐物까지도 조선 상인의 중계무역을 거쳐 모두 일본으로 轉賣되고 있다는 실정이었다.¹¹⁹⁾

한편 15~16세기 동아시아 국제교역에서 일본이 처하고 있던 이 같은 위상과 일본 상인의 교역 형태는, 일본산 銀의 대량 생산과 유통 이후 일대 전환을 보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중종 36년(1541) 11월 예조에서 올린 다음 계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시 예조는 전에는 왜인들이 銀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팔기 때문에 法을 세워 엄금하였는데, 近者에는 왜인들이 이 은을 중국의 남쪽 지방(南徼)에서 판매하여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면서 도리어 조선의 은을 반대로 사가기까지 하는 전혀 새로운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이에 국왕 또한, 왜

116) 村井章介/손승철·김강일 편역, 『동아시아속의 중세한국과 일본』(景仁文化社, 2008); 佐伯弘次/손승철·김강일 편역,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景仁文化社, 2010).

117) 앞의 주 33, 116의 諸논고 참조.

118) 주 87과 같음.

119) 위와 같음.

인들이 우리나라에 은을 판매한다는 얘기는 들어 왔지만 買入한다는 소문은 들어본 바 없다며, 그 상황에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었다.¹²⁰⁾ 倭銀이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의 은가가 폭락하는 가운데 이 銀을 이용한 부경 사무역이 急增하고 있던 당대 현실의 한편에서,¹²¹⁾ 전혀 반대로 조선의 銀마저 일본 상인들이 買入해 가는 이 새로운 은 유통 흐름은 이 시기 다른 조선의 官人 儒者들에게도 주목되고 있었다.

중종~명종조에 관인 생활을 하였던 魚叔權은 그의 문집 『稗官雜記』에서, 조선 상인들에 의해 鉛銀分離의 造銀法이 일본에 교습된 이후 왜은이 국내에 대거 유입되어 銀價가 폭락하고, 이어 持銀 부경 사무역이 번성하게 된 위의 실정을 마찬가지로 소개하고 나서, 1) 그런데 이후 왜인들이 은을 배에 실어 중국의 寧波府에 가서 매도하기 시작하고, 2) 이어 명나라 福建 浙江의 상인들이 일본을 몰래 왕래하며 왜은을 무입하고, 3) 이 과정에서 일본으로 가던 중국인들이 풍랑을 만나 전라도에 漂泊한 경우가 잦았는데 그 乘船 인원이 2~3백 명에 이르렀으며, 4) 이후로 국내에서 왜은이 점차 희귀하게 된 사정, 5) 그리고 중국 福建인들이 이 銀 무역 과정에서 銃砲를 왜에 전하여 이로부터 倭人(倭寇-필자 주)들의 放砲가 시작된 실정 등을 전하며, 결국 이 모든 사태가 조선 상인들이 造銀法을 왜인들에게 傳習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恨歎調로 기록하고 있었다.¹²²⁾

어숙권의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日本銀의 대거 유입과 함께 형성된 동아시아 국제교역에서 은의 유통 흐름 곧 '일본 → 조선 → 명'의 유통 체계는, 명나라와 일본의 海上을 통한 불법 무역과 함께 '일본 → 명'의 유통 경로가 새롭게 추가 되었으며(1), 2), 이후 조선 내 왜은이 희귀해졌다는 분석에서 드러나듯이(4), 前者보다 後者の 새로운 은 유통 경로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

120) 『中宗實錄』 卷96, 中宗 36年 11月 丙午, 18冊, 524쪽.

121) 韓相權, 앞의 「16世紀 對中國 私貿易의 展開」; 이태진, 앞의 「16세기 국제교역의 발달과 서울상업의 성쇠」; 본고 2장 참조.

122) 魚叔權, 『稗官雜記』 1(『大東野乘』 卷4).

에서 중국과 일본의 銀 貿易船이 조선의 해안에 漂泊하는 경우가 늘고 있었으며³⁾, 또한 왜인들이 충포를 求得하게 된 계기도 중국과의 이 은 무역을 통해서였다는 분석이었다⁵⁾.

중종과 명종조의 당대를 살았던 어숙권의 倭銀과 관련한 위 기록은 1)~5)의 실태 파악과 분석 내용이 현재 국내의 학계의 연구 성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 중국 내의 漸增하는 은 수요를 노리고서, 이처럼 조선을 거치지 않고 일본은의 명나라 유입 과정을 매개하고 있던 상인들과 그들의 무역 행위는, 그러나 海禁의 국가 정책을 견지해 오던 명나라에서는 당연히 不法의 행태였다. 중종 말년 경부터 연안에 출몰하기 시작한 이 ‘唐·倭 不辨’의 선박을 조선에서는 ‘荒唐船’이라 불렀고, 『실록』에 등장한 그 최초 사례는 중종 35년(1540) 정월 황해도 豐川府 沈方浦에 來泊한 중국 선박이었다.¹²³⁾ 이미 서해에서 왜선에 의한 船商 劫掠을 경험하고 있었던 조선 조정의 처지에서,¹²⁴⁾ 이 시기 이들 황당선의 연이은 출현은 매우 중대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중종 39년(1544) 6월 충청도 해안에 도착한 荒唐船은 처음부터 通商을 위해 일본으로 향해하다 표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모두 福建 상인들로, 李王乞 이하 150여 명의 선원들이 貿銀을 위해 일본으로 가다 漂泊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송환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조정에서 계속되고 있었다.¹²⁵⁾ 그런데 당시 이들 황당선과 관련된 국내의 각종 謄錄 기록들을 조사한 좌의정 洪彦弼의 보고가 유의된다. 그에 따르면, 그간 중국 蘇州 杭州의 선상들이 倭寇의 노략을 당하거나 풍랑을 만나 한 배에 탄 200여 명의 선원들이 우리나라에 표착하여 遼東 移咨를 거쳐 송환한 사례가 한 둘이 아니며, 그 가운데에는 火炮를 쏘며 抗戰하거나 조선인을 살해하여 처음에 거의 海賊으로 간주된 사례

123) 『中宗實錄』 卷92, 中宗 35年 正月 壬子, 18冊, 373쪽.

124) 『中宗實錄』 卷48, 中宗 18年 6月 辛亥, 16冊, 233쪽; 『中宗實錄』 卷48, 中宗 18年 7月 丙子, 16冊, 246쪽.

125) 『中宗實錄』 卷103, 中宗 39年 6月 辛卯, 19冊, 107쪽; 『中宗實錄』 卷103, 中宗 39年 6月 壬辰, 19冊, 107쪽.

도 있었다. 이에 대해 우의정 尹仁鏡은, 이번 황당선이 또한 다른 표류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해하고 衣糧을 겁탈하여 水賊과 다름없음을 들어, 遼東 移咨의 방법이 아니라 부경 편에 붙여 명나라 禮部에 직접 奏聞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나섰다.¹²⁶⁾

한편 조선 조정은 이들 황당선들이 비록 海賊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海禁 조치를 어기고 일본과 貿銀 교역에 나선 船商 행태 자체가 명나라에서 불법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명종 즉위년(1545) 8월 일본을 향하던 唐船이 전라도 馬島에 정박과 통상을 요구하였을 때, 사간원에서는 이들 漂泊 唐人들을 두고 일본과 交通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들로 下海를 국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국의 罪人이므로, 이들을 평상인의 漂流과 같이 응대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¹²⁷⁾ 조선 연안에 출몰하는 이들 황당선에 대한 논란의 와중에서, 중국인과 일본인의 銀을 매개로 한 船商 활동과 그에 따른 조선 표류는 이후 명종 조에도 계속되고 있었고,¹²⁸⁾ 조정에서는 이 같은 양국 선상의 ‘往來絡繹’의 상황에서 어찌 그 표류인들을 일일이 奏聞하여 송환하겠느냐는 탄식이 나오는 지경이었다.¹²⁹⁾

이처럼 조선의 연안에 황당선으로 지칭되던 商船들이 거꾸 출현하고 있을 즈음, 곧 중종 말년에서 명종 초년의 시기는 東아시아 해역에서 ‘嘉靖大倭寇’로 부르던 倭寇들의 활동이 또한 極盛을 이루던 시기였다.¹³⁰⁾ 따라서 조선 정부 또한 이들 황당선의 출몰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에 대한 對處에 골몰하고 있었다. 명종 8년(1553) 7월 朝講 자리에서 영경연사 沈連源은, 일본에서 은이 대량 생산된 이후 명나라 상인들이 왜인과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다가 혹은 풍랑으로 표류하여

126) 『中宗實錄』 卷104, 中宗 39年 7月 丙辰, 19冊, 113쪽.

127) 『明宗實錄』 卷1, 明宗 卽位年 8月 庚子, 19冊, 287쪽.

128) 『明宗實錄』 卷2, 明宗 卽位年 9月 甲申, 19冊, 343쪽; 『明宗實錄』 卷6, 明宗 2年 8月 癸巳, 19冊, 524쪽; 『明宗實錄』 卷13, 明宗 7年 7月 癸未, 20冊, 92쪽.

129) 『明宗實錄』 卷4, 明宗 元年 8月 戊子, 19冊, 435쪽.

130) 윤성익, 앞의 『명대 왜구의 연구』; 村井章介, 앞의 『중세 왜인의 세계』.

우리나라 해변에서 作賊하는 실태를 전하면서, 조선 정부가 이들을 窮追할 경우 더 큰 變을 우려하여 끝까지 추적하지 않게 한 기왕의 방침이 매우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¹³¹⁾

이 시기 조선 연안에 출몰하였던 중국 선박이 그 所載 물화가 적지 않고 船隻이 매우 完固한 형태여서¹³²⁾ 遠洋 항해를 감당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자체 내에 銃砲로 무장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¹³³⁾ 한편으로는 貿易商船이자 동시에 作賊을 서슴지 않는 海賊이기도 하였던 상황에서 나온 조선 정부의 대처였다. 실제 위 심연원의 지적이 있고 난 지 불과 2년 후인 명종 10년(1555) 전라남도 해안 일대를 습격하였던 해적 집단은 종래의 왜구가 아니었다. 이 乙卯倭變은 일본 九州의 고토(五島)를 근거로 하여 海商과 海賊 활동을 통해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중국인 王直과 그 휘하의 왜인들이 7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벌인 掠奪 행위였던 것이다.¹³⁴⁾ 이들은 16세기 명나라의 연안 일대를 횡행하며 습격과 노략을 거듭하고 있던 이른바 ‘嘉靖大倭寇’이자 ‘後期倭寇’ 집단이었다.

石見銀山을 비롯한 일본산 은의 대량 생산에 이어 전개되고 있던 중국과 일본 상인들 사이의 이와 같은 연계와 불법의 海上交易과 海賊 활동은, 기왕의 銀流通經路 上에 있던 상인 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집단으로는 우선 조선과 일본 각지의 교역 활동을 중개하고 있던 對馬島가 있었다. 명종 5년(1550) 7월 조정 대신들의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대마도의 서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당시 명나라의 商船 중에 일본인들을 이끌고 求利 활동, 곧 무역이나 해적 활동을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들은 모두 일본의 大賊黨이니 잡히는 대로 모두 살육하여 마땅하다는, 조선 정부에 대한 通知이자 요청 내용이었다.¹³⁵⁾ 앞서 소개한 을묘왜변을 일으킨 九州 五島 근거의 王直

131) 『明宗實錄』 卷15, 明宗 8年 7月 辛未, 20冊, 152쪽.

132) 『明宗實錄』 卷2, 明宗 卽位年 9月 甲申, 19冊, 343쪽.

133) 『中宗實錄』 卷104, 中宗 39年 7月 丙辰, 19冊, 113쪽 : 주 122와 같음.

134) 윤성익, 「後期倭寇로서의 乙卯倭變」(앞의 『명대 왜구의 연구』에 수록).

135) 『明宗實錄』 卷10, 明宗 5年 7月 壬寅, 19冊, 706쪽.

이나, 薩摩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徐海처럼, 중국인을 首長으로 하고 여기에 왜인들이 대거 가세하여 형성한 海商·海賊 집단, 곧 後期倭寇 세력의 일본은을 매개로 한 무역 활동이나 이른바 '倭寇'로서의 악탈 행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세력이 대마도였던 현실에서 나온 당연한 반응이었다.¹³⁶⁾

이 시기 대일무역의 仲介者로서 대마도의 곤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후기왜구로 상징되는 일본 내 경쟁 세력만이 아니라, 조선 정부 또한 종종조 내내 대일무역에 대한 관장과 통제의 提高 방침을 일관되게 강화해 가고 있었다. 反正 직후 그 같은 종종 정부의 '抑末' 방침에 반발하여 三浦倭亂을 기도하였지만 이내 좌절되었고, 겨우 재개한 壬申約條를 통해서도 무역 규모의 대폭 축소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대마도였다. 이후 대마도는 여러 경로를 통해 종종 연간 끊임없이 축소된 歲遣船 숫자와 교역 조건을 복구하기 위한 시도를 거듭하였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¹³⁷⁾

오히려 조선 정부는 漸增하는 일본 국왕사를 비롯한 왜인들의 공·사무역 요구를, 특히 代價로서 면포의 受給 사정을 들어 축소하거나, 또는 민간의 市場價를 반영하여 공무역가의 減下를 곤잘 시도하고 있어, 대마도를 비롯한 왜인들과 교역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었다.¹³⁸⁾ 종종 최말년인 39년(1544)에 발발한 蛇梁鎮 倭變은 그 같은 갈등의 한 국면이었다. 그러나 대마도는 이 왜변 2년 후인 명종 2년(1547), 이제는 개항장을 부산포 한 곳으로 축소하고 항거왜인

136) 이 시기 후기왜구로서 이들 王直, 徐海 집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앞의 주 130의 논고 참고. 대마도와 九州 五島 사이의 이 같은 긴장 관계에 대하여는, 종종 35년(1540) 9월, 일찍이 풍랑으로 五島 인근의 섬에 표류하였다가 이 때 돌아 온 濟州人 姜衍恭의 송환 과정에서, 兩島主의 作嫌 때문에 五島의 왜인들이 대마도인이 많은 齋浦 대신 경상도의 다른 포구 정박을 모색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흥미롭게 확인된다(『中宗實錄』 卷93, 中宗 35年 9月 丙午, 18册, 412쪽).

137) 『中宗實錄』 卷21, 中宗 10年 3月 甲戌, 15册, 65쪽; 『中宗實錄』 卷45, 中宗 17年 7月 己酉, 16册, 140쪽; 『中宗實錄』 卷54, 中宗 20年 4月 癸卯, 16册, 408쪽.

138) 『中宗實錄』 卷48, 中宗 18年 7月 甲午, 16册, 249쪽; 『中宗實錄』 卷55, 中宗 20年 9月 辛巳, 16册, 455쪽; 『中宗實錄』 卷55, 中宗 20年 10月 癸巳, 16册, 459쪽; 『中宗實錄』 卷65, 中宗 24年 2月 戊子, 17册, 103쪽.

의 체류조차 허용 받지 못하는 조건에, 더욱 축소된 무역 규정을 丁未約條의 형태로, 그것조차 일본 국왕사의 중재를 거쳐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¹³⁹⁾

한편 일본산 銀이 合法이나 非합법의 형태를 통해, 특히 후기왜구들의 중개를 거쳐 종래의 '일본 → 조선 → 명'의 경로를 대체하여, 이제 '일본 → 명'으로 직접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16세기 후반에 들면, 그간 조선 상인들이 누려 왔던 중국과 일본을 연계하는 中繼貿易의 立地와 利益 또한 크게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명종 19년(1564) 10월의 다음 시간원의 啓聞 내용이 매우 의된다. 당시 시간원은 대일무역과 관련한 수령과 邊將, 상인들의 貪風을 질타하고 있었는데, 당시 倭寇들이 海路를 통해 중국과 通한 이래 明珠·寶貝·珍錦繡·金銀 등이 모두 釜山浦에 모여들고 있던 실정을 거론하고 있었다.¹⁴⁰⁾

시간원은 다시 말해, 후기왜구 집단의 海商이나 海賊 활동을 통해 중국산 사치품들이 이제 조선 상인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이들 왜구들에 의해 부산포를 비롯한 조선의 포구에 몰려들고, 이를 둘러싼 奢侈와 貪風, 불법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던 실태를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 시기 선상이나 왜구를 통한 일본은의 대거 중국 유입이 기왕 조선 상인들이 누려 왔던 중계무역의 이익까지 일정 부분 축소시키며 진행되고 있었던 실정을 例證하는 한 사례라 하겠다.

그런데 16세기 후반에 들어 東아시아 교역 환경은 또 다시 일대 轉換을 맞이하게 된다. 명종 14년(1559) 최대의 후기왜구 집단의 수장이었던 왕직이 명나라에서 斬刑에 처해지고, 이를 전후하여 이른바 '가정대왜구'의 鎮定을 보게 되면서, 중국 정부는 국초 이래의 海禁을 완화하여 자국 商船들의 해외 활동과 외국 상인들과의 通商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또한 織田信長에 의해 오랜 戰國

139) 『明宗實錄』 卷5, 明宗 2年 2月 乙未, 19冊, 484쪽.

사랑진 왜변의 구체 경위와 정미약조에 대해서는 李鉉淙, 앞의 『朝鮮前期 對日交涉史研究』; 村井章介, 앞의 『중세 왜인의 세계』 참조.

140) 『明宗實錄』 卷30, 明宗 19年 10月 壬辰, 20冊, 707~708쪽.

時代의 내전이 수습되고 이후 豊臣秀吉로 이어져 統一政權이 수립되면서, 이제까지의 領國 단위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 노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¹⁴¹⁾

그러므로 16세기 최말기의 壬辰倭亂은, 결국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저와 같은 葛藤과 轉變을 배경으로, 이제 새롭게 수립된 일본의 통일 정권이 그간의 대 중국 대조선 교역에서 처해 있던 不利의 환경을 일거에 극복하여 그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동시에 이들 지역을 政治 軍事 上으로도 석권하려는 목적에서 도발한 貿易戰爭, 經濟戰爭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는 사건이라 하겠다.¹⁴²⁾

V. 結 語

16세기 對日貿易의 展開와 그 葛藤 양상을 日本銀의 量産을 전후하여 구축되고 있던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환경을 고려하면서 정리하면 이상과 같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고, 이 시기 최말의 壬辰倭亂이 동아시아 교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새기는 것으로 본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中宗朝 후반, 그 최말년 경에 시작된 日本産 銀의 대량 유입은 조선 사회에 수많은 경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15세기까지 銀은 대외무역에서 유입되는 경우보다 일본의 요청에 따라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던 품목이었으나, 연산조에 조선에서 개발된 鉛銀分離法이 상인의 매개를 거쳐 일본으로 傳授되면서, 石見銀山을 비롯한 일본은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중종 33년(1538)에 375斤에 달하는 대량의 은을 처음으로 倭使가 소지한 이래, 불과 몇 년 후인 동 37년(1542) 일본 國王使가 가져 온 銀은 무려 8만 兩3錢 200kg에 이르

141) 앞의 주 1, 20, 33의 諸논고; 박경수, 『전근대 일본유통사와 정치권력』(논형, 2012).

142) 李泰鎮, 앞의 「16세기 동아시아의 경제 변동과 정치·사회적 동향」; 이현창, 「임진란과 국제무역」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 1, (2013); 須川英徳, 「동아시아 해역 국제경제 질서와 임진왜란-해역 질서 및 화폐의 관점에서」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태학사, 2008).

는 엄청난 규모였다. 이렇게 대량 유입된 日本銀은 조선산 면포와의 교환이 주로 요청되었고, 향후 대일무역의 일대 전환점이 되고 있었다. 海禁을 천명하고 있던 明나라와 극히 제한된 朝貢 기회를 허용 받고, 그마저 寧波의 亂(중종 18, 1523) 이후 對中貿易의 합법적 경로가 축소되고 있던 일본의 처지에서, 이 시기 대거 增産된 銀의 주된 販路는 조선일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다.

일본은의 대량 유입은 우선 조선과 일본 사이의 수출·입 품목의 구성, 곧 조선산 織物綿紬·麻布·綿布과 穀物 對 일본산 鑛産物銅鐵·硫黃 등과 남방산의 胡椒·蘇木·各種 香料 등으로 편성되었던 종래의 교역품 구성을, 일거에 ‘朝鮮産 綿布 對 日本銀’으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물론 대일 수출품으로 여전히 면포 외 직물과 곡물 등이 활용되고, 또한 일본 상인들 역시 硫黃이나 호초와 같은 남방산의 특산물을 소지하고는 있었으나, 그 규모나 빈도에서 이제 조선 면포와 일본 은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은 뚜렷하였다. 한편 이 같은 일본은의 대량 유입에 따라 국내 銀價가 폭락하여 종종초 최말기 4년 사이에 공무역가 기준으로 종전의 1/6의 수준으로 급락하였고, 국내의 주요 銀産地의 採鑛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마침내 端川마저 採銀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왜은의 유입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이를 활용한 赴京 사무역의 번성이었고, 그와 같은 持銀 대중국 사무역의 激增의 정도는 이제 ‘倍萬於前’으로 표현되면서, 한 使行 휴대 은량이 수천 냥에서 만여 냥(400kg)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16세기 대일무역을 주도하고 있던 상인들은 京中 富商大賈로 흔히 지칭되던 京商이나 開城商人들이었다. 이들은 대일무역, 특히 사무역과 밀무역에 따르는 商利 확보를 위해 三浦 인근의 지방에 主人家를 설정하여 2~3년씩 接主하며, 이들 主人의 중개 하에 대일무역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이 같은 불법 무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직접 倭通事職에 진출하거나 이들과 적극 연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남쪽 변방의 武藝 取才에 응모하여 萬戶와 같은 軍職을 자신들의 대일무역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다. 삼포만이 아니라 도성에서도 이들은, 東平館의 官屬이나 왜통사들과 적극 연대하여 市塵을 배경으로 한

대규모 사무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들은 삼포와 도성 외에도, 倭使들의 上京 행로상의 외방에서도 왜인들과 불법 무역을 실행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시기 조선 상인들은 대일무역의 수출입 품목들을 대중무역과 연계하여, 중국과 일본의 物貨를 잇는 中繼貿易의 공간을 적극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商利益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었다. 여러 명의 大商人들이 資本을 合資하여 '同務'를 결성하고, 이렇게 조성한 대규모 資産에 토대하여 일본산 물품, 특히 금은을 買入하여 이를 赴京 使行 편으로 중국에 보내 綵段과 白絲 등 사치품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처분하거나 그 일부를 다시 일본 상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러한 대일과 대중무역의 과정을 거쳐 二重의 商利를 획득하는 형태였다. 일본 은이 본격 유입되면서 이제 중계무역의 주요 물품은 예전의 남방산 胡椒에서 倭銀으로 대체되었고, 이를 활용한 持銀 赴京 사무역은 조선 정부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極盛의 수준으로 번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선 상인들의 중계무역의 기회와 이익 규모 또한 확대되는 형편이었다. 특히 일본의 대중국 직접 교역의 기회가 명나라의 海禁 정책과 寧波의 亂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된 여건에서, 조선 상인들이 벌이는 이 같은 중-일을 연계하는 중계무역의 공간은 더욱 확장되고 있었다. 여기에 일본의 대량 유입 이후 나타난 국내 銀價의 폭락에 따라 당대 중국의 은가가 조선보다 15배에서 25배 이상 高價였던 상황은, 이 같은 조선 상인들의 二重의 중계무역 이익 확보의 주된 원천이 되었고, 반면 일본 상인의 처지에서는 이에 따른 불만이 점증해 가는 형국이었다.

국초 이래 조선은 명을 중심으로 구축된 東아시아 朝貢貿易의 체제에서 주변국, 특히 일본에 비해 국제교역의 여건에서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누리고 있었다. 10년 1회 進貢의 일본과 달리, 1년 3회의 定期 使行에 수시의 非정기 사행까지 포함하여 15세기에는 연 평균 6.6회, 16세기 이후에도 약 3.5회의 赴京 사행을 매년 파견하면서 그에 수반한 무역 기회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反正初 중종 정부는 前朝 弊政의 革新을 내세우며, 대일무역에서도 세종조의 黜

亥約條에 준거하여 국가의 관장과 통제를 提高하는 ‘抑末’ 정책에 주의를 傾注하였고, 이에 따랐던 三浦倭亂(중종 5, 1510)은 必至의 사세였다. 우호적인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여건을 배경으로, 여기에 덧붙여진 조선 정부의 ‘억말’ 정책에 따라 조선 상인들의 대일무역에서의 商利가 더욱 확대되어 가는 반면, 대마도를 비롯한 일본 상인들의 불리가 종종 초년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상황에서 삼포왜란이라는 騷亂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환경에서 큰 변화가 종종 최말년 경, 일본은의 대량 생산 이후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명나라의 海禁 조치와 영파의 난 이후 그나마 차단되었던 일본의 對中國 交易의 통로를 대신하여, 日本銀이 중국 상인과 일본 상인, 또는 倭寇 세력과의 연계와 직접 교역을 거쳐, 당시 銀 수요가 매우 컸던 명나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海禁의 원칙에서 이 같은 銀 유통은 물론 중국에서 불법이었지만, 이제 商物에 銃砲까지 구비한 日本銀 무역을 위한 선박이 ‘荒唐船’의 형태로 조선 연안에 다수 출몰하여 갔고, 심지어는 일본 상인이 朝鮮銀을 매입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실정까지 보고될 정도였다. 종래의 ‘일본 → 조선 → 중국’을 경유하였던 倭銀의 유통 경로가 이제 ‘일본 → 중국’으로 대체되는 상황이었고, 그 중심에는 ‘後期倭寇’로 지칭되는 집단이 크게 역할하고 있었다. 이들은 王直·徐海 일당과 같이 중국인 首長과 다수의 倭寇 성격의 왜인들로 구성되어, 九州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한편으로 海商 활동을, 다른 한편으로 海賊의 擄掠을 일삼던 집단이었다. 명종 10년(1555) 전라도 연해 일대를 휩쓸었던 乙卯倭變은 바로 九州 五島 일대에 본거를 둔 이 王直 세력의 소행이었다.

이 같은 후기왜구의 熾盛은 조선과의 무역을 일본 내에서 중개하던 對馬島와 그간 중·일 사이의 중계무역에 따르는 商利를 누리 왔던 조선 상인들에게는 위기이자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왕직의 斬刑(명종 14, 1559)에서 상징되듯이 중국에서 이른바 ‘嘉靖大倭寇’가 鎮定되면서 海禁 정책이 완화되고, 여기에 한 세기 이상 지속되어 왔던 일본의 戰國時代 內戰 상황이 織田信長과 그에 이은 豊臣秀吉에 의해 수습되어 각 領國을 통합하는 集權의 統一政權이 일본

에서 출현하면서, 이제 16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환경은 또 한 차례急變을 맞이하게 되었다. 壬辰倭亂이 바로 그것으로서, 임진왜란은 16세기 세계사 차원, 그리고 동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에서도 海域을 중심으로 비야흐로 勃興하고 있던 '상업의 시대' '교역의 시대'에 즈음하여, 그간 일본이 처해 왔던 국제교역의 불리를 일거에 轉倒시켜 이를 국내의 정치 사회 문제와 연계하여 통일정권의 경제 기반으로 삼으려 한 貿易戰爭이자 經濟戰爭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투고일자: 2018.05.09 심사일자: 2018.05.09 게재확정일자: 2018.05.24)

주제어 : Trade with Japan, Private trade, Smuggling trade, Japanese Silver, Intermediary trade

Keywords : 대일무역, 사무역, 밀무역, 일본은, 중계무역

[참고문헌]

- 金柄夏, 『李朝前期 對日貿易 研究』(韓國研究院, 1969).
- 李鉉淙, 『朝鮮前期 對日交涉史研究』(韓國研究院, 1964).
- 朴平植, 『朝鮮前期商業史研究』(서울, 지식산업사, 1999).
- _____, 『朝鮮前期 交換經濟와 商人 研究』(서울, 지식산업사, 2009).
- 柳承宙, 『朝鮮時代鑛業史研究』(高麗大學校出版部, 1993).
- 윤성익, 『명대 왜구의 연구』(景仁文化社, 2007).
- 岸本美緒·宮嶋博史/김현영·문순실 역, 『조선과 중국, 근세 500년을 가다』(역사비평사, 2003).
- 佐伯弘次/손승철·김강일 편역,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景仁文化社, 2010).
- 村井章介/이영 역, 『중세 왜인의 세계』(도서출판 소화, 2003).
- 村井章介/손승철·김강일 편역, 『동아시아속의 중세한국과 일본』(景仁文化社, 2008).
- 小葉田淳, 『金銀貿易史の研究』(法政大學出版局, 1976).
- 岸本美緒, 『東アジアの「近世」』(山川出版社, 1998).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創文社, 1981).
- 田中健夫, 『中世對外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1975).
- 구도영, 「16세기 조선의 '寧波의 亂' 관련자 표류인 승환 - 朝·明·日의 '세 가지 시선」 『歷史學報』 224(역사학회, 2014)
- _____, 「16세기 동아시아 질서에서 본 조선 對明貿易의 특징과 위상」 『歷史學報』 235(역사학회, 2017).
- 朴平植, 「朝鮮初期의 對外貿易政策」 『韓國史研究』 125(한국사연구회, 2004).
- _____, 「15世紀 後半 對外貿易의 擴大」 『韓國史研究』 181(한국사연구회, 2018).
- _____, 「16世紀 對中貿易의 盛況과 國內商業」 『歷史教育』 146(역사교육연구회, 2018).
- 李正守, 「15·16세기의 對日貿易과 經濟變動」 『釜大史學』 22(부대사학회, 1998).
- 李泰鎮, 「16세기 東아시아의 경제 변동과 정치·사회적 동향」 『朝鮮儒敎社會史論』(지식산업사, 1989).
- 이태진, 「16세기 국제교역의 발달과 서울상업의 성쇠」 『서울상업사』(태학사, 2000).
- 이헌창, 「임진란과 국제무역」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 1(2013).
- 韓相權, 「16世紀 對中國 私貿易의 展開 - 銀貿易을 중심으로」 『金哲堉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知識産業社, 1983).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Conflict of the 16th Century Trade with Japan

Park, Pyeong Sik
(Seoul National Univ.)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and conflict of the 16th century trade with Japan.

In the 16th century, around the very last year of King Joongjong's reign, the large influx of Japanese silver into the Joseon Dynasty brought about an extensive shift in the trade with Japan. As a result the overall composition of goods imported from or exported to Japan changed, the price of domestic silver plummeted, and domestic silver productions ceased. Furthermore, private trade with China began to thrive with the use of this Japanese silver.

In this period, the trade with Japan was mainly led by Gyeongsang and Gaeseong merchants. Their intermediary trade business linking China and Japan based on large-scale capital, which was formed by the assets of the joint partnership of the merchants was massively lucrative. Their main trade items were Japanese silver and Chinese luxury goods.

Under the amicable environment formed by Ming-centric tribute trade system, Joseon monopolized the intermediary trade of the early Japanese silver. In the mid-16th century, however, the room for the trade and profits of the Joseon merchants reduced. It wa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merchants who directly linked Japan and China with trade ships after the enormous production of Japanese silver, and the infestation of the late-period Japanese pirates.